

#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方案\*

## —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

---

\* 本稿의 내용은 著者 개인의 의견으로 韓國租稅研究院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關稅廳 局長, 韓國租稅研究院 派遣.

# 目 次

|                                   |    |
|-----------------------------------|----|
| <b>第1章 序 論</b> .....              | 5  |
| 第1節 研究의 目的 .....                  | 5  |
| 第2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             | 9  |
| <b>第2章 信用貸出의 意義</b> .....         | 11 |
| 第1節 信用貸出의 意味 .....                | 11 |
| 第2節 擔保의 種類와 運用 現況 .....           | 13 |
| 第3節 信用貸出의 國民經濟的 效果 .....          | 19 |
| <b>第3章 信用貸出 現況</b> .....          | 27 |
| 第1節 우리나라의 信用貸出 現況 .....           | 27 |
| 第2節 外國의 信用貸出 現況 .....             | 32 |
| 第3節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制度的 措置 內容 .....   | 34 |
| <b>第4章 信用貸出 擴大의 制約要因</b> .....    | 36 |
| 第1節 金融構造의 側面 .....                | 36 |
| 第2節 金融 外的 要因 .....                | 43 |
| 第3節 信用貸出 擴大의 制約要因에 대한 綜合 判斷 ..... | 46 |
| <b>第5章 信用貸出 擴大方案</b> .....        | 48 |
| 第1節 金融政策面에서의 對策 .....             | 49 |
| 第2節 金融機關의 業務改善 .....              | 54 |

|                                     |           |
|-------------------------------------|-----------|
| 第 3 節 信用社會 定着을 위한 制度 및 與件의 整備 ..... | 57        |
| 第 4 節 信用保證制度의 擴充 .....              | 67        |
| <b>第 6 章 要約 및 結論 .....</b>          | <b>73</b> |
| <b>〈參考文獻〉 .....</b>                 | <b>76</b> |

# 表 目 次

|   |    |
|---|----|
| 〈表 1〉 一般銀行의 擔保別 貸出 構成比                  | 18 |
| 〈表 2〉 不動產 擔保 貸出時 金融 附帶費用의 算出例           | 24 |
| 〈表 3〉 一般銀行 元貨貸出金의 擔保別 構成比(金額 基準)        | 28 |
| 〈表 4〉 預金銀行 中小企業貸出金의 擔保別 構成比             | 29 |
| 〈表 5〉 第一銀行 貸出金의 對象別, 擔保別 構成比(1993年末 現在) | 29 |
| 〈表 6〉 銀行그룹별 元貨貸出金의 擔保別 構成比(1993年末 現在)   | 30 |
| 〈表 7〉 信託貸出의 擔保別 貸出金 構成比                 | 31 |
| 〈表 8〉 ○○ 相互信用金庫의 擔保別 貸出金 現況(1993年末 現在)  | 31 |
| 〈表 9〉 施設貸與會社의 年度別 信用取扱比重(實行額 基準)        | 32 |
| 〈表 10〉 日本 都市銀行貸出金의 擔保構成 推移              | 34 |
| 〈表 11〉 主要國의 製造業間 財務構造 比較                | 41 |
| 〈表 12〉 製造業 規模別 財務構造(1993年 基準)           | 42 |
| 〈表 13〉 韓一銀行의 信用貸出 基準表                   | 50 |
| 〈表 14〉 一般銀行 經營評價 基準                     | 54 |
| 〈表 15〉 우리나라의 信用評價機關 現況(1994年 3月末 現在)    | 66 |
| 〈表 16〉 信用 保證 推移                         | 68 |
| 〈表 17〉 信用保證機關에 대한 出捐 現況(1993年末 現在)      | 69 |
| 〈表 18〉 年度別 代位辨濟推移                       | 69 |

# 그림 목次

|   |    |
|---|----|
| [그림 1] 利子率水準에 따른 貸出額 決定 .....               | 21 |
| [그림 2] 貸出利子率과 金融機關의 期待收入과의 關係 .....         | 22 |
| [그림 3] 金融附帶費用이 있는 경우의 利子率 및 企業의 借入額 決定..... | 24 |
| [그림 4] 金利規制下에서의 資金需給 .....                  | 39 |
| [그림 5] 危險에 상응한 貸出利子率 決定 模型 .....            | 39 |

# 第1章 序 論

## 第1節 研究의 目的

### 1. 中小企業 育成의 必要性

우리 경제는 1960年代 이후 政府主導로 급속한 經濟開發을 推進하여 오는 過程에서 初期에는 外資와 國內의 우수하고 값싼 勞動力을 活用하여 輸入對替 내지 組立輸出 方式으로 輕工業化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70年代에는 產業構造가 變化하고 石油波動(oil shock)이 發生하는 등 經濟與件이 크게 變하는 가운데 金融·稅制面에서의 政策的 支援을 통하여 巨大한 裝置産業인 重化學工業에 대한 集中投資가 이루어짐으로써 產業構造가 高度化되고 生産能力이 크게 擴充되었다.

이에 따라 1960年代 이후 높은 成長을 持續<sup>1)</sup>하여 왔으나 이 過程에서 中小企業의 成長은 相對的으로 低位에 머무르게 되었고 經濟力集中 問題<sup>2)</sup>가 發生하여 1970年代 후반부터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育成이 필요하다는 主張이 대두되었다. 또한 1980年代 중반 이후부터는 政治的 民主化 推進과 並行하여 各界各層에서의 衡平에 대한 欲求가 噴出됨에 따라 經濟의 均衡發展 내지 衡平圖謀 次元에서 經濟力集中 緩和政策과 함께 中小企業 育成政策이 推進되어 왔다.

---

1) 世界銀行(IBRD)이 東아시아 6개국의 成長要因을 國家別로 分析하여 1993년에 發刊한 “The Lessons of East Asia” 중 “Korea : A Case of Government-Led Development” (Kihwan Kim & Danny M. Leipziger)에서 우리나라를 政府主導型 成長의 成功事例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金利規制, 政策金融에 따른 金融部門의 脆弱을 問題로 제기하고 있다.

2) 公正去來委員會에 의하면 1990년말 현재 上位 3社의 市場占有率이 50% 이상인 非競爭型市場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中小企業 育成의 必要性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大企業 爲主의 輸出産業에 대한 集中的인 支援으로 惹起된 經濟力 集中을 緩和할 必要가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 向上을 위하여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서로 高度의 分業化·相互補完的 協業關係를 形成하여 나갈 必要가 있고,

셋째, 産業構造的 側面에서 發達이 要求되고 있으나 現在 生産基盤이 脆弱한 狀態에 있는 機械·部品·素材産業은 주로 注文生産에 依存하고 設計와 精密加工이 必要한 中小企業型이 많으며,

넷째, 國民所得의 增加에 따른 消費의 高級化·個性化 趨勢에 맞추어 細分化된 市場의 出現, 技術革新의 加速化로 製品壽命의 週期가 短縮될 展望이므로 이에 伸縮的으로 對應하기 위하여도 中小企業이 大企業보다 훨씬 有利하고,

다섯째,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中小企業의 比重이 製造業의 경우 1990年末을 基準<sup>3)</sup>으로 事業體數의 98.3%, 從業員數의 61.7%, 附加價値의 44.3%, 總輸出의 42.1%를 占하고 있는 점을 勸案할 때 國民經濟의 均衡發展 次元에서도 中小企業의 育成이 要請되고 있다.

最近 經濟의 對內外 與件은 急變하고 있다. 國內的으로 衡平에 대한 要求가 增加되고, 經濟運營에 있어서 自律과 競爭이 提高되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市場開放 等 國際化가 급속히 推進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中小企業의 育成은 우리 經濟의 效率性を 높이고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必要할 뿐만 아니라 政治·社會的인 安定을 위하여도 時急한 課題가 되고 있다.

## 2. 中小企業 金融의 問題點

中小企業은 一般的으로 信用도가 낮고, 金融機關의 中小企業에 대한 情報의

---

3) 統計廳, 『鑛工業 統計調查 報告書』, 1992.

不足으로 貸出金 償還의 不確實性 내지 危險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불리하게 評價받고 있다. 또한 貸出件數는 많고 件當 貸出規模는 작아 金融機關의 貸出取扱費用이 相對的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金融機關을 利用하는 데 있어서 不利한 立場에 있다. 특히 零細企業은 事業 自體가 不安定할 뿐만 아니라 金融機關이 貸出審査時 一般的으로 要求하는 財務諸表 等 具備書類 自體가 未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金融機關 利用이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이 金融資金의 需給이 超過需要 狀態에 있고 金利가 規制되는 狀況에서는 性格上 採算性·安定性を 考慮하여 資金을 運營할 수밖에 없는 金融機關으로서는 危險(risk)이 相對的으로 작은 大企業 貸出을 選好할 수밖에 없다. 또한 大企業은 金融機關의 株主人 경우가 많고 金融機關이 大企業과 去來時 外換去來 等 餘他去來를 誘致하기가 容易하고 任職員을 就業시킬 수 있는 등의 利點이 있기 때문에 더욱 選好되고 있다. 그러므로 中小企業의 金融機關 借入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고, 危險이 相對的으로 높은 小規模企業, 新設企業, 急成長企業, 技術開發指向企業 等은 貸出을 받기가 거의 不可能한 것이 現實이다.

따라서 中小企業金融 問題를 단순히 金融市場 原理에 따라 解決하는 데에는 現實的으로 限界가 있으며, 이러한 中小企業의 構造的인 金融上的 不利를 是正·補完하기 위하여 金融政策 側面에서의 措置가 必要하다.

그동안 中小企業의 育成을 위하여 金融政策面에서 中小企業專擔金融機關의 設立擴大<sup>4)</sup>, 中小企業에 대한 政策金融支援, 金融機關의 中小企業에 대한 與信取扱強制<sup>5)</sup>,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를 통한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配分 擴大 및 其他 金融規制上的 例外適用을 통한 誘引 賦與<sup>6)</sup> 等 수많은 政策이 推進되어 왔으며, 이러한 政策은 1980年代 이후 더욱 強化되어 最近에는 政策金融의 大부

4) 中小企業銀行·中小企業專擔銀行(大東銀行·東南銀行).

5) 현재 市中銀行은 總貸出額의 45% 以上, 地方銀行은 80% 以上, 短期金融會社 및 保險會社는 總貸出額 및 어음保證額의 35% 以上을 中小企業에 貸出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6) 中小企業貸出時 第3者名義 擔保提供 許容 等

분이 中小企業支援에 集中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中小企業은 여전히 金融機關을 통한 資金調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一般的으로 그동안의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政策이 별로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中小企業 金融政策의 實效성이 낮은 것은 金融原理보다는 政治的 내지 社會的 安定 次元에서 지나치게 單線的이고 形式的으로 推進된 데에도 그 原因이 있지만 보다 根本的으로는 그동안의 經濟開發過程에서 야기된 構造의 問題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長期低利의 政策金融으로 經濟力이 大企業에 偏重되었으며, 借入經營을 통한 成長으로 企業의 財務構造가 脆弱하게 되었고, 人爲的인 低金利政策으로 慢性的인 資金超過需要가 發生하는 등 金融市場의 與件이 中小企業에 不利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 되었다. 아울러 政策金融支援에 따라 形成된 非合理的인 金融慣行 내지 및 企業人の 行態와 金融機關을 政府와 同一視하는 一般國民의 意識水準 等도 金融政策의 效果를 制約하는 要因이 되어 왔다.

앞으로의 中小企業 育成을 위한 金融政策은 現在와 같은 資金의 優先割當이나 低金利適用 方式의 政策金融 支援을 止揚하고 金融市場에 市場原理가 適用되는 폭을 擴大하여 中小企業이 金融市場에서 市場金利를 支拂하면서 손쉽게 資金을 調達할 수 있도록 하고 金融機關 利用에 있어서의 隘路要因을 解消해주는 方向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最近에 金融市場에서의 借入與件이 많이 改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中小企業金融政策에 있어서 信用貸出 問題가 보다 重要하고 實質的인 問題가 될 것이다.

### 3. 信用貸出에 대한 一般의 視角과 관련한 問題 提起

現在 대다수의 中小企業人들은 金融機關을 政府와 同一視하여 하나의 支援機關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學界 等の 專門家들 사이에서도 “信用貸出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金融政策이나 金融慣行이 잘못되어 잘 안되고 있는 것

이다.”라는 認識이 澎湃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推進된 政府의 信用貸出 擴大政策도 實效性은 별로 없으면서 國民의 金融政策에 대한 信賴度만 低下시키는 結果를 초래한 面이 많다.

이러한 狀況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指摘되어 온 대로 金利自由化 等 金融自由化가 이루어지고 잘못된 金融慣行이 是正되면 과연 信用貸出이 擴大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는 많은 疑問이 提起된다.

즉, 앞으로 中小企業에 實質的인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信用貸出을 擴大해 나가기 위하여는 그동안 信用貸出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原因이 주로 金融政策이나 金融慣行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보다 중요한 다른 原因에 기인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檢討와 分析이 必要하다 하겠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信用貸出을 制約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實質的인 信用貸出 擴大를 위해서는 어떤 方案들이 講究되어야 하는가를 檢討해 보고자 한다.

##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本 研究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實際 金融政策의 運用上 適用 可能性을 重視하여 實證的인 分析을 주로 使用하였으며, 信用貸出과 關聯된 現行 制度 및 信用貸出 現況에 대한 統計資料를 蒐集하여 分析하고, 關聯 研究文獻 等を 參考하여 代案을 提示하는 데 重點을 두었다.

아울러 그동안 信用貸出에 관한 研究가 활발치 못하여 이와 關聯한 研究 文獻의 利用이 制約되어 있고 統計資料도 충분치 않아 現況把握이 어려운 點을 克服하기 위하여, 實際業務 運營에 關聯된 金融政策 業務擔當者, 金融機關 關係者, 中小企業者 等과의 個別的인 接觸을 통한 意見聽取 結果와 筆者가 財務部에서 金融政策業務를 擔當했던 經驗을 活用하였다.

本稿는 信用貸出, 특히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貸出을 爲主로 하여 信用貸出의

眞正한 意味와 그 必要性을 살펴보고, 信用貸出을 어렵게 하고 있는 實際的인 要因은 무엇이며, 과연 金融自由化와 金融機關의 慣行 改善이 이루어지면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貸出 擴大가 可能한 것인지를 分析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經濟現實을 勘案한 實質的인 信用貸出 擴大方案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檢討하여 政策代案을 提示하였다.

本稿의 構成은 序論部門인 第1章에 이어 第2章에서는 信用貸出의 意義를, 第3章에서는 우리나라의 信用貸出 現況을 살펴보고 第4章에서는 信用貸出의 制約 要因을 分析하였다. 第5章에서는 이러한 分析을 토대로 實際的인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政策代案을 提示하였고 第6章에서는 以上の 論議를 要約하여 整理하고 結論을 맺는 順序로 이루어져 있다.

## 第2章 信用貸出의 意義

### 第1節 信用貸出의 意味

信用(credit)이란 財貨와 用役을 購入하는 경우 그 對價의 支拂을 時間的 間隔을 두고 行할 수 있는 能力을 意味한다<sup>1)</sup>. 信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去來가 信用去來이며 信用去來은 去來當事者間에 主觀的 信賴를 바탕으로 制限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외상賣出 形態 等 企業間 信用이 代表的인 例라고 할 수 있다.

信用去來은 經濟發展과 함께 所得發生의 時差, 所得支出에 관한 選好體系의 相異 等에 따라 發生한 金融行爲를 바탕으로 信用을 媒介하거나 代位(credit substitution)하는 役割을 하는 金融機關이 發展하고 金融商品이 多樣化되면서 점차 擴大되어 왔다. 이에 따라 經濟活動에 있어 信用去來가 一般化되고 있으며 最近에는 先進國일수록 金融의 發展과 並行하여 信用社會로 移行해 가고 있는 趨勢에 있다.

金融機關은 個個人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信用을 提供하거나 貸出者와 借入者의 仲介를 통하여 個個人의 信用去來를 뒷받침하는 機能을 한다. 이는 金融機關이 專門的인 能力을 바탕으로 많은 良質의 情報를 蓄積하여 形成한 優秀한 信用 調査·分析·評價能力과 信用管理能力을 土臺로 보다 低廉한 費用으로 情報를 創出하고 配給할 수 있기 때문에 可能的인 것이다.

金融機關이 借入者의 支拂能力만을 基礎로 行한 貸出을 信用貸出이라고 定義할 때, 信用貸出은 借入者가 貸出時 金融機關과 約定한 대로 元利金을 償還하지 못할 危險, 이른바 借入者의 信用危險(default risk)을 金融機關이 正確히 把握할 수 있어야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借入者의 信用危險이 높거나 借入

1) 孫正植·姜柄皓·許榮彬, 『金融機關 經營論』, 博英社, 1990. 8, p. 251.

者에 대한 信用調査가 不可能한 경우 및 金融機關의 信用調査 내지 評價能力이 不足한 경우에는 信用貸出이 어렵게 된다.

金融機關이 借入者의 信用危險을 評價하는 一般的 要素로는

- ① 借入者의 道德性和 誠實성을 나타내는 人格
- ② 資金 및 收益能力에 基礎한 償還能力
- ③ 資本構造로 나타내어지는 債務負擔能力
- ④ 借入者가 處해 있는 經濟的 狀況 또는 經濟環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評價要素에 따라 評價한 結果 借入者의 信用危險이 높으면 金融機關은 原則적으로 貸出取扱을 忌避할 것이다. 그러나 信用危險을 甘受하고 貸出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貸出金利를 適用하거나 貸出債權의 全部 또는 一部에 該當하는 金額에 相應한 擔保를 取得하게 된다.

다만, 擔保는 借入者의 信用度を 높이는 것이 아니고 借入者의 償還不能危險을 補充하기 위한 補充的 手段일 뿐이므로 信用貸出을 嚴密하게 定義하면 借入者의 信用도에 相應하게 貸出金利 水準을 決定·適用하고 擔保 없이 이루어지는 貸出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擔保는 物的擔保뿐만 아니라 人的擔保도 包含하는 것이므로 信用保證機關·金融機關·連帶保證人 등의 保證(guarantee)이나 保險(insurance) 加入을 전제로 한 貸出은 眞正한 意味에서의 信用貸出이 아니다.

그러나 現實적으로는 信用貸出의 概念을 단순히 物的擔保 없이 이루어지는 貸出<sup>2)</sup>로 定義하는 경우도 있고, 物的擔保와 信用保證機關 및 金融機關의 保證 없이 이루어지는 貸出<sup>3)</sup>(企業 또는 個人의 連帶保證附 貸出 포함)을 意味하는 것으로 定義하는 경우도 있다.

信用市場(credit market)은 一般市場(standard market)과는 달리 借入者의 同質性和 去來의 同時성이 없어 不完全한 市場이다. 따라서 資本의 配分(allo-

2) 韓國銀行에서 作成하고 있는 統計上 分類方法(『經濟統計年報』, 各號).

3) 韓國銀行銀行監督院과 個別金融機關의 分類方法.

cation)과 點檢(monitoring)側面에서 一般的인 現象인 情報不足의 程度가 클수록 市場의 效率性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狀況에서 金融機關은 貸出金의 償還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金利는 適用하지 않고 信用割當(credit rationing)을 하거나 擔保(collateral)를 취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信用情報가 不足한 경우에는 構造的으로 擔保貸出이 不可避한 面이 있다.

그러나 金融機關은 國民經濟의 效率性을 提高하는 方向으로 資產을 運用하여야 할 責任, 즉 公共性이 要求되므로 積極的으로 信用調査·分析技法을 開發하여 信用貸出을 擴大하여야 하며 國民經濟的 側面에서도 信用貸出을 擴大하기 위한 政策的 努力이 要求된다.

이러한 信用貸出의 擴大를 위한 政策的 代案을 樹立하기 위하여는 우선 信用貸出의 概念을 明確하게 設定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擔保貸出의 內容을 擔保의 種類와 運用現況, 擔保別 貸出 現況 및 金融政策側面에서의 擔保取得에 대한 制限 與否 等의 面에서 살펴보고 信用貸出이 왜 필요한 것인지, 즉 信用貸出의 國民經濟的 效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第 2 節 擔保의 種類와 運用 現況

### 1. 擔保의 種類

擔保는 앞에서든 言及한 바와 같이 借入者의 信用이 낮은 경우에 債務償還危險을 補完하기 위하여 貸出者에게 提供되는 것으로서 擔保 自體가 借入者의 信用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擔保는 性格上 物的擔保(collateral)와 人的擔保(endorsement)로 分類할 수 있으며, 物的擔保에는 土地·建物 等 不動產과 機械·在庫資產·有價證券 및 預金 等 動產이 있고 人的擔保로는 第3者의 保證, 즉 우리나라의 경우 信用保證

機關의 保證, 다른 金融機關의 支給保證, 個人 또는 他企業 等 第3者의 連帶保證 이 있다.

## 2. 擔保別 特徵 및 運用 現況

### (1) 物的 擔保

#### (가) 不動產

不動產은 土地·建物 等이 代表的인 것으로 그동안 擔保價値로서의 確實性과 持續的인 地價上昇으로 金融機關이 가장 選好하고 있는 擔保物이다.

實例로 不動產 擔保貸出이 不實化된 경우에 擔保價額이 不足하더라도 相當期間 後에는 擔保價値가 上昇하여 不實債權의 元利金을 上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金融機關은 債權 確保 側面에서 土地의 擔保 取得을 가장 選好하고 있으며, 그 結果 現在 金融機關이 取得한 物的 擔保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企業이 不實化되어 擔保物을 處分할 경우 당해 擔保物件의 價値가 낮아지는 것이 一般的이며, 債權回收時 法의手續費用, 債權回收期間 동안의 經過利子, 資產處分에 따라 賦課되는 租稅·公課金, 貸金 및 專貫金의 優先控除<sup>4)</sup> 等에 對備하여 金融機關은 不動產 擔保 貸出時 通상 貸出金의 150% 水準 相當額의 擔保를 要求하고 있으며 根抵當도 過多한 金額으로 設定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借入者가 負擔하는 擔保權 設定費用이 實際貸出額에 비하여 더욱 높아지게 되고, 企業의 不動產 取得을 擴大시킴으로써 企業의 不必要한 追加的인 費用 負擔을 초래하고 있다. 最近에는 不動產 景氣 沈滯에 따라 擔保價値가 低下되고 流動性도 낮아져 金融機關이 擔保權 行使時 예상되는 損失을 補填하기 위하여 더 많은 擔保를 要求하는 傾向이 있다.

---

4) 住宅貸借保護法 第3條 및 第3條의 2.

## (나) 動産

動産은 機械設備·什器等 企業設備, 在庫品等 運營資産 및 貴金屬·書畫·骨董品等 有形資産과 預金·有價證券等 金融資産으로 分類된다.

이 중 機械設備는 일단 設置하여 使用하기 始作하면 中古品이 되고 汎用성이 낮아 擔保價値가 下落<sup>5)</sup>하게 되어 後取擔保로서도 取得을 忌避하게 된다. 在庫資産·貴金屬等 餘他 動産도 심한 價格變動으로 正確한 價値評價가 어렵고 物理的으로 擔保管理도 힘들기 때문에 擔保로서 活用이 잘 안 되고 있는 實情이다.

## (다) 預金 및 有價證券

企業은 一般的으로 流動性を 確保하거나 施設投資等 將來의 資金使用에 對備하여 預金이나 有價證券等 金融資産을 保有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金融機關의 要求에 의하여 拘束性 預金の 形態로 預金이나 有價證券等 金融資産을 保有하는 경우도 있다.

預金이나 有價證券을 保有하고 있는 企業이 追加資金이 必要한 경우에는 預·貸 金利差等을 감안할 때 新規借入보다는 預金引出이나 有價證券을 賣却하여 資金을 調達하는 것이 보다 有利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擔保로 提供된 金融資産은 企業經營과 關聯하여 保有가 不可避한 株式等 一部를 除外하고는 대부분 이 拘束性 預金の 形態라고 할 수 있다.

## (2) 人的擔保

### (가) 保證專門機關의 支給保證

주로 信用이 脆弱하고 擔保도 不足한 中小企業 및 庶民等 個人을 對象으로

- 
- 5) 施設貸與會社의 경우 施設貸與會社가 소유한 기계를 대여하는 것이므로 信用貸出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상기 기계의 특성 때문에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擔保를 取得하는 경우가 많다.

保證專門機關이 行하는 貸出支給保證을 말한다.

保證專門機關으로는 現在 政府出捐機關인 信用保證基金<sup>6)</sup>과 特殊保險會社<sup>7)</sup>가 있으며, 그동안 中小企業 等의 信用力을 補完해 주는 데 큰 役割을 擔當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그 比率은 낮은 水準이다. 또한 信用度보다는 政策的인 必要에 의하여 保證運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中小企業에 대한 補助金의 性格을 띠게 되었고 最近에는 保證 企業의 倒産擴大로 代位辨濟가 增加하여 保證規模도 萎縮되고 있는 實情이다.

#### (나) 金融機關의 支給保證

金融機關의 支給保證은 一般的으로 當該 金融機關이 設定한 擔保가 餘裕가 있거나 去來企業이 信用이 있는 경우에 金融機關이 資金負擔을 回避하기 위하여 貸出 대신에 行하게 된다.

또한 一般的으로 金融機關은 保證手數料 收入 때문에 貸出보다는 支給保證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中小企業에 대한 支給保證貸出은 支給保證을 하는 金融機關이 일반적으로 擔保를 取得하고 行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中小企業 立場에서는 物的擔保貸出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支給保證手數料만큼 金融費用만 追加 負擔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 (다) 關聯企業의 連帶保證

關聯企業의 連帶保證은 크게 系列企業群內의 系列企業間 相互保證形態와 協力關係 또는 下請關係에 있는 企業에 대한 關係企業의 保證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대부분은 현재 獨占防止 내지 經濟力 集中 緩和 次元에서 政府가 強制로 縮

6) 信用保證基金·技術信用保證基金·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基金·住宅信用保證基金.

7) 韓國保證保險(株), 大韓保證保險(株).

小시키고 있는 系列企業群內的 相互保證<sup>8)</sup>이며, 關係企業의 保證은 自動車會社等 一部에서 行해지고 있으나 미미한 狀態다.

#### (라) 個人의 連帶保證

家計貸出이나 企業貸出의 경우에 第3者 또는 企業主가 連帶保證을 하는 경우로서 金融機關이 거의 모든 貸出에 이를 要求하고 있으나 最近에는 少額家計貸出을 中心으로 緩和되는 趨勢에 있다.

#### (3) 擔保別 貸出 現況

現在 統計가 作成되고 있는 一般銀行의 擔保別 貸出現況을 살펴보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物的擔保貸出의 比重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人的擔保인 保證專門機關 等の 支給保證貸出을 包含한 信用貸出은 1985年 이후 별로 增加하지 않고 있다.

---

8) 1996年 3月末까지 自己資本의 200% 이내로 縮小토록 하고 있다.

〈表 1〉 一般銀行<sup>1)</sup>의 擔保別貸出<sup>2)</sup> 構成比

(단위 : %)

|                   |    | 1980年末 | 1985年末 | 1990年末 | 1992年末 |
|-------------------|----|--------|--------|--------|--------|
| 不動產               | 件數 | 55.0   | 42.9   | 36.1   | 37.0   |
|                   | 金額 | 54.7   | 44.8   | 43.1   | 42.0   |
| 動 產               | 件數 | 0.8    | 0.6    | 0.6    | 0.9    |
|                   | 金額 | 2.5    | 2.8    | 1.4    | 2.3    |
| 預金等               | 件數 | 9.3    | 9.4    | 11.3   | 9.0    |
|                   | 金額 | 7.0    | 5.7    | 4.7    | 3.9    |
| 其 他 <sup>3)</sup> | 件數 | 1.1    | 0.6    | 1.9    | 3.1    |
|                   | 金額 | 5.0    | 2.9    | 2.5    | 2.1    |
| 信 用 <sup>4)</sup> | 件數 | 33.8   | 46.5   | 50.1   | 49.1   |
|                   | 金額 | 30.8   | 43.8   | 48.3   | 49.7   |

註 : 1) 信託計定과 外國銀行 國內支店, 동화·동남·대동·하나·보람은행 除外.

2) 海外支店 貸出金 包含.

3) 鑛·漁業權, 船舶, 財團 等の 擔保와 國債·株式·社債 等 包含.

4) 信用保證基金 等の 支給保證貸出 包含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號.

### 3. 擔保 取得 制限

現在 金融機關의 貸出時 信用貸出을 擴大하기 위하여 擔保取得을 制限하는 경우는 없다.

韓國銀行法 및 銀行法의 規定에 따라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金融機關의 擔保取得에 관하여 制限을 할 수 있으나 이도 信用貸出을 擴大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金融機關 貸出의 健全性을 確保하거나 選別金融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sup>9)</sup>.

9) 韓國銀行法 第67條 및 銀行法 第30條의 規定에 따라 貸出의 最長期限, 擔保의 種類와 그에 대한 貸出金額을 定할 수 있다.

이러한 法律規定에 따라 1990年 5月 8日 발표된 『不動產投機 抑制對策』의 一環으로 制定된 『金融機關 與信運用 規程』(金融通貨運營委員會 規程)에서 企業의 非生産的인 用途의 不動產 保有를 抑制하고 企業主가 自己名義의 不動產을 自己가 所有 또는 支配하고 있는 企業이나 他企業에 擔保로 提供(이른바 第3者 名義 不動產의 擔保提供)하고 貸出받은 資金으로 다시 不動產을 買入하는 等의 方法으로 貸出資金을 變則的으로 流用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貸出時 不動產 擔保取得을 制限하고 있다.

이러한 擔保取得制限은 短期金融會社, 保險會社, 綜合金融會社, 施設貸與會社 等에도 適用하고 있다.

參考로 擔保取得을 制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貸出 支給保證의 制限(銀行의 貸出保證은 總貸出金の 10% 範圍內)<sup>10)</sup>과 拘束性預金에 대한 監督上 規制를 통한 預金擔保 制限 等を 들 수 있다.

### 第 3 節 信用貸出의 國民經濟的 效果

擔保貸出은 一般的으로 擔保設定에 따라 負擔하는 費用과 擔保物의 使用制限에 의하여 發生하는 機會費用 等으로 信用貸出에 比하여 借入者의 實質利子 負擔이 높을 뿐만 아니라 擔保設定期間 때문에 借入者가 必要한 때에 適期貨出을 어렵게 한다.

不動產 擔保 爲主의 貸出慣行은 企業의 不動產 保有를 助長하고 新規貸出을 받기 위해 新規不動產을 購入하게 하는 等 不必要한 不動產 需要를 誘發함으로써 不動產 價格을 上昇시키며, 한편으로는 不動產 價格의 上昇을 기대한 不動產 投機를 發生하게 한다. 이에 따라 金融資金이 生産을 위한 投資財源으로 제대로 活用되지 못하여 金融資金配分의 歪曲이 發生하고, 現在와 같이 制度金融機關에 대한 金融當局의 金利規制로 貸出金利가 市場의 均衡利子率보다 낮게 適用

10) 金融機關 與信運用細則 第5條(韓國銀行總裁規程).

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慢性的인 資金超過需要를 發生시키는 原因이 된다.

한편, 預金 및 有價證券 擔保貸出은 拘束性 預金の 增加로 現在와 같은 目標爲主의 通貨管理方式下에서 通貨管理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預·貸金利率에 따라 借入者의 實質利子負擔을 높이게 되고, 預金이나 有價證券의 資金化를 制約하게 된다.

金融機關이나 信用保證機關의 保證附貸出도 保證料 負擔에 따른 費用增加와 保證을 위한 審査節次로 適期支援을 어렵게 하는 등의 問題가 發生한다.

따라서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金融의 效率性を 提高하기 위해서는 信用貸出을 擴大할 必要가 있는바, 信用貸出의 擴大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金融資金 配分の 效率性 提高

金融資金 配分の 效率性이란 金融資産의 價格인 利子率이 金融市場에서 資金供給者와 資金需要者의 限界收益率이 一致되는 水準에서 決定되는 것을 意味하며, 金融資金 配分の 效率성이 높을수록 資源配分이 最適에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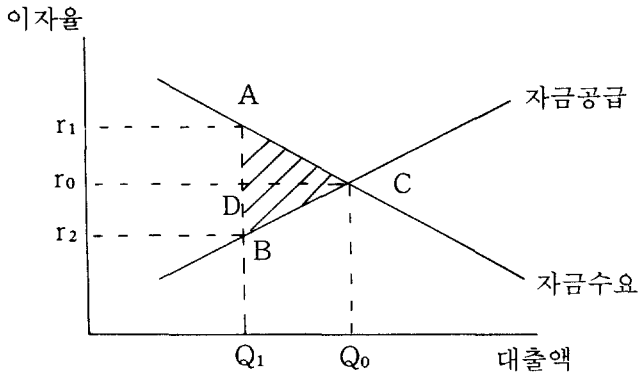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利子率이 市場의 不完全性으로  $r_1$  또는  $r_2$ 에서 決定되면 貸出額은  $Q_1$ 에서 決定되고 삼각형 ABC만큼의 社會的 損失이 發生하게 된다.

즉, 利子率이  $r_1$ 에서 決定되면 貸出者 剩餘는 사각형  $r_1 A D r_0$ 만큼 늘어나는 반면 借入者 剩餘가 사각형  $r_1 A C r_0$ 만큼, 貸出者 剩餘가 삼각형 DCB만큼 줄어들게 된다.

利子率이  $r_2$ 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借入者 剩餘가 사각형  $r_0 D B r_2$ 만큼 늘어나게 되나 貸出者 剩餘가 사각형  $r_0 C B r_2$ 만큼, 借入者 剩餘가 삼각형 ACD만큼 줄어들게 되어 결국 전체적으로는 삼각형 ABC만큼의 社會的 剩餘가 減

少하게 된다.

[그림 1] 利率水準에 따른 貸出額 決定



金融資金 配分の 效率性은 金融市場에서 利用可能한 情報가 充分하고 迅速하게 金融資産의 價格에 反映될수록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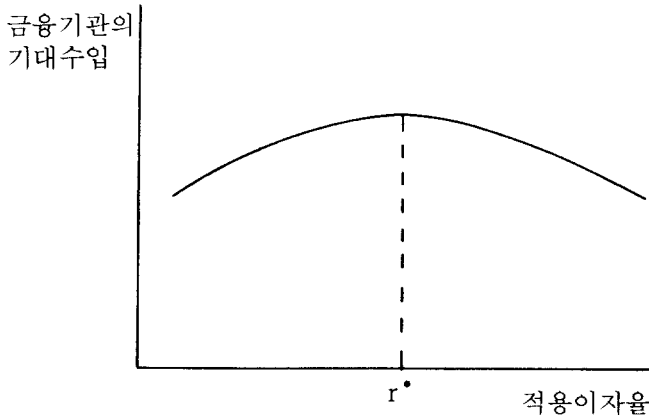
Stiglitz와 Jaffe(1990)는 貸出市場에서의 情報의 非對稱性으로 인하여 逆誘引(adverse incentive)과 逆選擇(adverse selection)이 惹起되며,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金融機關이 信用割當(credit rationing)을 할 可能性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情報의 非對稱性으로 인하여 金融機關이 借入者의 投資活動을 監視하기 어려운 경우에 借入者는 보다 危險性이 높으나 成功時에 高收益을 가져다 줄 수 있는 事業에 投資하고자 하는 誘引이 생기게 된다. 또한 金融機關이 借入者의 貸出 償還能力을 正確히 把握하지 못하여 모든 借入者에게 均一한 貸出金利를 適用하게 되면 貸出 償還能力을 갖고 있는 우수한 借入者는 보다 有利한 條件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金融機關 또는 다른 金融市場을 찾아가게 되고 貸出 償還能力이 없는 借入者만이 남게 되어 貸出金의 危險이 커지게 된다.

金融機關이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貸出金利를 引上하면 일면 金融機關의 貸出收益性이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貸出利子率이 오히려 逆誘引과 逆選擇 現象을 더욱 加速化시켜 借入者의 信用危險을 增加시킴으로써 債務不履行 可能性(the probability of default)이 더욱 높아지게 되어 [그림 2]에서 나타내는 바와같이 金融機關의 期待收入(expected return)이 오히려 減少하게 된다.

따라서 情報가 不完全한 金融市場에서 金融機關은 市場에서 形成되는 均衡利子率보다 낮게 貸出利子率을 適用하면서 信用割當을 하게 되며 이 경우에 補完적으로 擔保를 取得하게 된다고 한다<sup>11)</sup>.

[그림 2] 貸出利子率과 金融機關의 期待收入과의 關係



信用貸出의 擴大는 情報의 非對稱性에 따른 金融市場의 不完全性으로 因하여 스스로 內在的 限界가 있으며 完全한 信用貸出은 現實적으로 不可能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信用貸出의 擴大는 金融機關이 借主의 信用에 대한 情報를 調

11) 銀行이 擔保를 取得하고 동시에 利子率을 定할 수 있어도 信用割當은 일어난다고 主張한다.

査·分析·評價하고 差等金利를 適用하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完全하지는 않을지라도 보다 效率的인 金融市場을 통하여 金融資金 配分の 效率性を 높이는 效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2. 金融附帶費用의 節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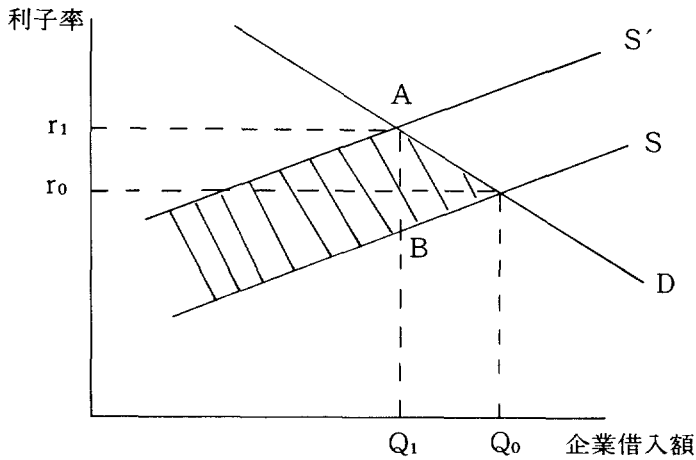
金融費用은 利子和 利子 以外에 實質的으로 借入者가 負擔하는 手數料, 其他 貸出에 따라 支拂되는 諸般 費用인 附帶費用을 포함한다.

金融機關은 多數의 資金提供者와 需要者를 對象으로 去來하기 때문에 去來費用面에서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가 存在하게 되어 金融去來 費用을 節減시키는 機能을 한다. 金融去來 費用 中 借主의 信用에 대한 危險費用을 包含하는 情報求得 費用은 原則的으로 利子率에 反映되어 이 費用이 높을수록 實效利子率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金融機關이 優秀한 信用情報 生産能力을 바탕으로 하여 貸出을 擴大해 나갈수록 金融費用이 줄어들어 國民經濟的 效率性이 높아지게 된다.

[그림 3]에서 D는 資金의 需要曲線이고 S, S'는 각각 金融附帶費用이 없는 경우와 金融附帶費用(AB)이 있는 경우의 資金의 供給曲線이라 하면 金融附帶費用이 없는 경우에는 利子率  $r_0$  에서 借入額이  $Q_0$  만큼 이루어지나 金融附帶費用이 있는 경우에는 利子率  $r_1$  에서 借入額이  $Q_1$  만큼만 이루어지게 되어 貸付部分만큼 社會的 厚生이 減少하게 된다.

[그림 3] 金融附帶費用이 있는 경우의 利率 및 企業의 借入額 決定



現在 擔保貸出에 따라 實際 發生되고 있는 附帶費用은 擔保資産의 固定化 내지 使用制限에 따른 機會費用을 제외하고도 擔保權 設定에 따른 附帶費用이 貸出金の 1% 水準을 上廻하고 있다. 즉, 不動産 擔保貸出의 경우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根抵當 設定時의 税金, 國民住宅債券의 強制 買入 및 法務士 手數料 等の 費用이 發生하게 된다.

<表 2> 不動産 擔保 貸出時 金融 附帶費用의 算出例

(貸出金 1億원, 中小企業銀行의 경우)

(단위 : 萬원)

| 項 目               | 費用額 | 算出根據  |
|-------------------|-----|---|
| 登 錄 稅             | 30  | 根抵當 設定額 (貸出金の 150%)의 0.2%                   |
| 教 育 稅             | 6   | 登錄稅의 20%                                    |
| 國民住宅債券<br>買 入 費 用 | 75  | 國民住宅債券 買入額은 根抵當設定額의 1%, 同債券 割引 賣却時 純損失(50%) |
| 法 務 士 費 用         | 10  |   |
| 計                 | 121 |   |

資料 : 中小企業銀行

信用保證機關이나 金融機關 貸出保證의 경우에도 保證料가 年間 1% 水準에 달하고 金融機關이 擔保 이외에도 拘束性預金<sup>12)</sup>이나 餘他 去來에 의한 補償을 要求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信用貸出이 이루어지면 年間 約 1% 水準의 金融附帶 費用 節減效果가 豫想된다.

### 3. 中小企業의 金融利用機會 擴大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그 性格上 信用이 낮아 信用貸出이 어렵지만 信用貸出 慣行이 定着되면 金融機關의 信用調査·評價技法이나 貸出 審査能力이 培養되고, 信用危險에 相應한 金利 適用이 可能해져 積極的으로 貸出을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金融自由化에 따라 金融機關間 競爭이 높아지면 優秀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機會가 擴大될 것이다.

이 過程에서 比較적 信用도가 높고 健實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貸出條件의 改善도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 4. 其他 附隨的 效果

#### (1) 不動產 價格의 安定

信用貸出의 擴大는 企業의 不必要한 不動產 保有를 줄이게 하는 效果가 있어 全般的인 不動產 投機抑制를 통하여 物價의 安定 等 經濟安定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不動產 價格의 安定에 따라 부수적으로 金融機關 立場에서는 不動產擔保貸出에 있어서의 擔保價値의 安定을 기할 수 있어 過多한 擔保取得을 抑制할 수 있다.

---

12) 補償預金이라고도 하며 借入者 立場에서는 追加金利負擔이 되고 銀行立場에서는 追加的인 收入 또는 費用 節減이 된다.

## (2) 外國 金融機關과의 競爭力 提高

現在 급속히 推進되고 있는 金融國際化 내지 金融市場 開放에 따라 향후 外國 金融機關과의 競爭이 치열해질 것으로 展望되는데 이에 對備하여 貸出「서비스」 개선과 實質利子 負擔 輕減을 통하여 國內 金融機關의 競爭力을 높이는 效果가 있다.

## (3) 信用社會의 定着 促進

信用貸出의 擴大는 金融機關이 信用도에 따라 貸出 顧客을 差等化하게 됨으로써 借入者 스스로 信用을 쌓고 信用에 關聯된 情報를 金融機關에 적극적으로 提供하여 金融去來時보다 有利한 條件을 適用 받으려는 努力을 加速化시켜 社會 全般的으로 信用에 대한 意識을 높이고 信用社會의 定着을 促進하게 하는 效果가 있다.

# 第3章 信用貸出現況

## 第1節 우리나라의 信用貸出現況

현재 國內에서 作成·發表되고 있는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關聯 統計資料는 韓國銀行이 매년 작성하여 公表하고 있는 『經濟統計年報』중 「一般銀行의 擔保別 貸出金 現況」資料밖에 없다(〈表 1〉參照). 그러나 이 資料는 信用貸出에 信用保證基金 等 信用保證機關과 金融機關의 支給保證 貸出을 包含하고 있어 眞正한 意味의 信用貸出 規模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統計作成對象 金融機關을 市中銀行과 地方銀行에 限定하고 있고 對象金融機關의 貸出範圍에 最近에 급격히 增加하고 있는 信託貸出<sup>1)</sup>을 除外하고 있어 統計的 有意性이 매우 낮다.

이외에 韓國銀行이나 韓國銀行銀行監督院 등에서 金融政策業務 遂行上 必要에 의하여 극히 部分的인 內容을 非公式的으로 把握<sup>2)</sup>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金融機關別, 擔保別 統計로서 體系化되지 못하고 包括範圍도 각각 달라 統計資料로서 活用하기에는 限界가 있다.

따라서 現在 公式的 또는 非公式的으로 把握되고 있는 資料와 求得possible한 個別金融機關의 資料를 토대로 信用貸出現況을 概略的으로 整理·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保證附貸出 이외의 信用貸出<sup>3)</sup>의 比重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年 이후 별로 增加하지 않고 있고, 1991年 이후부터는 오히려 減少하고 있

---

1) 信託貸出의 銀行計定 貸出金에 대한 비율은 1988년말 5.7%, 1989년말 6.7%, 1990년말 7.6%, 1991년말 8.6%, 1992년말 10.7%로서 계속 增加되고 있다.

2) 韓國銀行 資金部에서 中小企業金融에 대한 政策資料로서 預金銀行을 대상으로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貸出現況을 파악하고 있고, 韓國銀行銀行監督院에서 經營監督次元에서 銀行經營統計를 作成하고 있다.

3) 餘他企業 및 個人의 連帶保證分 포함.

으며 이 중에서도 純粹 自己信用에 의한 信用貸出은 미미할 것으로 判斷된다<sup>4)</sup>. 다만, 不動產 等 物的擔保貸出이 信用保證機關 等の 保證附貸出로 移轉되고 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表 3〉 一般銀行<sup>1)</sup> 원貨貸出金<sup>2)</sup>의 擔保別 構成比(金額基準)

(단위 : %)

|                 |                   | '85          | '90          | '91          | '92          | '93  |
|-----------------|-------------------|--------------|--------------|--------------|--------------|------|
| 物的<br>擔保        | 不動產               | 44.3         | 42.5         | 42.3         | 42.0         | 43.2 |
|                 | 動 產               | 2.8          | 1.4          | 2.3          | 2.3          | 2.0  |
|                 | 預 金               | 5.6          | 4.9          | 4.3          | 3.8          | 4.0  |
|                 | 其 他 <sup>3)</sup> | 2.9          | 2.2          | 1.8          | 2.1          | 2.2  |
|                 | 小 計               | 55.6         | 51.0         | 50.7         | 50.2         | 51.4 |
| 保 證<br>(信用保證基金) | 4.3<br>(2.5)      | 6.3<br>(4.7) | 7.9<br>(6.0) | 9.5<br>(6.2) | 9.1<br>(6.3) |      |
| 信 用             | 40.1              | 42.7         | 41.4         | 40.3         | 39.5         |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註 : 1) 市中銀行(14개) 및 地方銀行(10개)

2) 國內에서의 원貨表示貸出金(外貨貸出 除外)

3) 國公債·株式·社債 等 有價證券 包含.

資料 : 韓國銀行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1994.

둘째, 預金銀行을 基準으로 한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貸出 比重은 매우 낮은 水準에 있고 별로 改善되지 않고 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年 6月末 現在 預金銀行의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金 중 信用貸出 比重은 30% 水準이며, 個別銀行(제일은행)의 例를 살펴보다도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貸出은 大企業보다 매우 낮은 狀態에 있다.

4) 大企業의 系列企業間의 相互支給保證과 個人貸出의 連帶保證이 대부분으로서 이를 제외한 純粹 自己信用에 의한 貸出은 매우 적을 것으로 推定된다.

〈表 4〉預金銀行<sup>1)</sup> 中小企業貸出金の擔保別 構成比

(단위 : %)

|                    | 1988年末 | 1990年末 | 1992年末 | 1993年6月末 |
|--------------------|--------|--------|--------|----------|
| 物的擔保貸出             | 60.7   | 58.6   | 55.6   | 54.6     |
| 保證貸出 <sup>2)</sup> | 13.1   | 15.0   | 15.1   | 15.2     |
| 信用貸出               | 26.2   | 26.4   | 29.3   | 30.2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註 : 1) 市中銀行・地方銀行・中小企業銀行・國民銀行만 包含.

2) 信用保證機關 및 金融機關 支給保證貸出 包含.

資料 : 韓國銀行 資金部

〈表 5〉第一銀行 貸出金の對象別, 擔保別 構成比(1993年末 現在)

(단위 : %)

| 擔保種類   | 大企業   | 中小企業  | 家計    | 全體    |
|--------|-------|-------|-------|-------|
| 物的擔保貸出 | 34.9  | 48.8  | 60.1  | 42.9  |
| 保證貸出   | 16.8  | 10.8  | 2.3   | 12.0  |
| 信用貸出   | 48.3  | 40.4  | 37.6  | 45.1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資料 : 第一銀行

셋째, 은행그룹별 信用貸出 取扱比重은 市中銀行이 가장 높고 地方銀行・特殊銀行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去來企業이나 貸出資金의 性格差異에 기인된 것으로 實際 差異는 별로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年末 現在 市中銀行의 信用貸出比重이 41.2%로서 地方銀行의 32.5%, 特殊銀行의 27.7%(1992年末 現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市中銀行은 相互支給保證에 의한 大企業에 대한 貸出이 많아 信用貸出比重이 相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地方銀行은 去來企業이 대부분 中小企業이기 때문에 낮은 것이고, 特殊銀行의 경우는 住宅을 擔保로 하는

住宅資金貸出이 큰 比重을 차지<sup>5)</sup>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6〉 銀行그룹별 원貨貸出金の 擔保別 構成比(1993年末 現在)

(단위 : %)

|      |     | 市中銀行  | 地方銀行  | 特殊銀行 <sup>1)</sup> |
|------|-----|-------|-------|--------------------|
| 物的擔保 | 不動產 | 41.1  | 52.0  | 49.8               |
|      | 動產  | 2.2   | 1.1   | 1.4                |
|      | 預金等 | 7.0   | 3.1   | 5.6                |
|      | 小計  | 50.3  | 56.2  | 56.8               |
| 保證   |     | 8.5   | 11.3  | 15.5               |
| 信用   |     | 41.2  | 32.5  | 27.7               |
| 計    |     | 100.0 | 100.0 | 100.0              |

註 : 1) 國民銀行·企業銀行·住宅銀行(1992年末 現在)

資料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1994., 各 特殊銀行.

넷째, 第2金融圈의 信用貸出比重은 一般的으로 銀行보다 낮은 상태이다.

信託計定 貸出金の 擔保別 構成을 보면,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不動產擔保 貸出을 中心으로 擔保貸出의 比重이 줄어들고 있고 이를 제외한 信用貸出 性格의 어음대출 등의 比重이 늘어나고 있으나, 信託貸出 중 어음대출의 상당부분이 短期金融會社 等 餘他 金融機關에 대한 貸出인 점을 勘案하면 一般企業이나 個人에 대한 信用貸出은 매우 낮은 것으로 推定된다.

또한 比較的 積極的으로 信用貸出을 取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某 相互信用金庫의 경우를 例로 살펴보면,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連帶保證을 포함한 信用貸出은 19% 水準에 불과하고 이 중 連帶保證이 없이 이루어진 純粹한 信用

5) 1992年末 現在 國民銀行, 企業銀行, 住宅銀行의 원貨貸出金 合計는 28兆원이며 이 중 住宅銀行의 住宅資金은 9兆 7千億원으로서 34. 7%를 占하고 있다.

〈表 7〉 信託貸出의 擔保別 貸出金 構成比

(단위 : %)

|        | 1987年末 | 1990年末 | 1991年末 | 1992年末 |
|--------|--------|--------|--------|--------|
| 不動產擔保  | 61.1   | 45.1   | 36.3   | 32.0   |
| 有價證券擔保 | 0.2    | 0.5    | 0.3    | 0.8    |
| 收益權擔保  | 11.1   | 19.5   | 24.1   | 17.6   |
| 保證附    | 6.2    | 7.0    | 6.6    | 6.3    |
| 어음貸出等  | 21.4   | 27.9   | 32.7   | 43.3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資料 : 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1993. 12.

〈表 8〉 ○○ 相互信用金庫의 擔保別 貸出金 現況(1993年末 現在)

(단위 : 百萬元, %)

|      | 貸出金(A) | 構成比   | 延滯額(B) <sup>1)</sup> | 延滯比率(B/A) |
|------|--------|-------|----------------------|-----------|
| 擔保貸出 | 34,175 | 81.1  | 3,543                | 10.4      |
| 信用貸出 | 7,988  | 18.9  | 552                  | 6.9       |
| 純粹信用 | 3,843  | 9.1   | 202                  | 5.3       |
| 連帶保證 | 4,145  | 9.8   | 350                  | 8.4       |
| 計    | 42,163 | 100.0 | 4,095                | 9.7       |

註 : 1) 3개월 이상 延滯額

資料 : ○○ 相互信用金庫

貸出은 9%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擔保貸出보다 信用貸出의 경우가 연체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信用貸出의 擴大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한편, 信用取扱을 原則으로 하고 있는 施設貸與會社의 信用取扱 比重은 꾸준히 增加하고 있으나 아직도 擔保를 取得하는 경우가 많다.

〈表 9〉 施設貸與會社の 年度別 信用取扱比重(實行額 基準)

(단위 : %)

|        | 信 用  | 擔 保  | 計     |
|--------|------|------|-------|
| 1975年末 | 33.6 | 66.4 | 100.0 |
| 1980年末 | 58.4 | 41.6 | 100.0 |
| 1985年末 | 72.0 | 28.0 | 100.0 |
| 1990年末 | 69.5 | 30.5 | 100.0 |
| 1992年末 | 81.5 | 18.5 | 100.0 |

資料 : 韓國리스金融協會

以上과 같은 分析을 綜合하면 향후 中小企業 金融政策에 있어서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貸出 擴大가 切實한 課題가 되고 있다고 判斷된다.

## 第 2 節 外國의 信用貸出 現況

外國의 信用貸出制度 等에 관하여는 알려진 資料가 별로 없고 信用貸出에 대한 統計도 作成되고 있지 않다. 이는 先進國의 경우 一般的으로 信用貸出이 慣行으로 定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日本의 경우 信用貸出 統計를 一部 把握할 수 있으나 基本的으로 信用貸出<sup>6)</sup>을 擴大하기 위한 制度나 政策은 없다.

### 1. 美 國

金融機關은 信用分析을 통하여 貸出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慣例이며, 信用危

6) 信用保證機關의 保證에 의한 貸出 이외의 信用貸出.

險上 必要한 경우 制限的으로 擔保提供을 要求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擔保貸出은 信用도가 낮은 경우에 부득이 行하는 것이므로 良質의 貸出이 아닌 것으로 認識되고 있고 金融機關의 擔保管理에 所要되는 費用 때문에 貸出金利도 信用貸出보다 높은 것이 一般的이다.

따라서 貸出決定에 있어서 擔保有無보다는 融資期間의 長短, 償還方法, 債務者가 遵守해야 할 約定事項 등에 큰 比重을 두고 있다.

이러한 無擔保貸出原則은 信用社會가 定着되어 信用을 잃으면 經濟活動이 困難해지는 등 信用에 대한 一般의 意識水準이 높고 金融機關도 競爭關係에서 優秀顧客을 誘致하기 위하여 高度의 信用評價技法을 바탕으로 信用으로 貸出함으로써 金融費用 負擔을 輕減시킬 必要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豊富한 情報과 優秀한 技法을 保有한 信用評價專門會社도 信用貸出 定着에 큰 役割을 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 2. 日 本

從來 日本의 金融機關은 危險(risk)을 補填하기 위하여 長期與信은 全額(full) 擔保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短期與信은 信用狀態에 따라 가능한 한 擔保를 徵求하는 다소 伸縮的인 姿勢를 보여 왔다<sup>7)</sup>. 그러나 近年에 成長率이 鈍化되어 資金需要가 줄어들고 産業構造가 從來의 自動車·造船 등 裝置産業 中心에서 技術集約産業·知的서비스産業으로 高度化되면서 冒險企業(venture business) 등 物的基盤이 취약한 企業들이 많아지고 海外資本調達의 擴大, 金融自律化의 進展으로 金融機關間 競爭이 深化되면서 信用貸出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낮은 水準이다.

---

7) 우리나라와 같이 傳統的으로 不動產擔保와 連帶保證人의 入保를 原則으로 하고 있었다.

〈表 10〉日本 都市銀行貸出金の擔保構成 推移

(단위 : %)

|                  |       | 1976  | 1980  | 1985  | 1991               |
|------------------|-------|-------|-------|-------|--------------------|
| 物的<br>擔保         | 不動產   | 31.4  | 28.5  | 21.8  | 24.6               |
|                  | 有價證券等 | 11.1  | 10.9  | 10.1  | 5.7                |
|                  | 小計    | 42.5  | 39.4  | 31.9  | 30.3               |
| 保證 <sup>1)</sup> |       | 25.2  | 27.0  | 26.6  | 33.2               |
| 信用               |       | 32.3  | 33.6  | 41.5  | 36.5 <sup>2)</sup> |
| 計                |       | 100.0 | 100.0 | 100.0 | 100.0              |

註 : 1) 信用保證機關의 保證 等 包含.

2) 1989년 이후 prime rate 導入 擴大에 의하여 信用貸出과 預金의 대규모 相計가 行해져 信用貸出 比重이 減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資料 : 韓國銀行 調查部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信用貸出은 그 나라의 信用에 대한 認識이나 產業構造·金融市場의 與件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強制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第 3 節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制度的 措置 內容

現在 信用貸出 擴大를 위하여 金融機關의 貸出業務運用上 強制하는 制度는 없다. 다만,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擴大를 誘引하기 위한 制度와 信用貸出 擴大를 하여야 한다는 訓示的 내지 宣言的 內容에 관한 規程이 일부 있다.

첫째, 誘引制度의 內容을 살펴보면 現在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規程<sup>8)</sup>으로 金融機關의 內部關聯 規定에 의거 正當하게 取扱한 信用貸出이 不實化될 경우 關聯者가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했을 때에는 免責 可能토록 各 銀行의 貸出業務 取扱要綱을 運用토록 指導하고 있으며, 銀行 經營評價時 中小企業

8) 金融機關 內部 統制業務 取扱 要領 第11條.

에 대한 信用貸出 取扱實績을 評價項目의 하나인 公共性 中 通貨信用政策 呼應度 評價時 反映하고 있다<sup>9)</sup>.

둘째, 宣言的 勸告 內容을 살펴보면,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中小企業 同業者間 相互保證을 하는 경우이거나 大企業이 保證하는 受給企業의 경우에 대하여는 積極的으로 信用貸出을 하도록 하고 中小企業의 擔保力 不足緩和에 努力하도록 勸告<sup>10)</sup>하고 있으며, 金融機關이 上業어음을 割引하는 경우에 어음支給人 및 割引 依頼人의 쌍방 또는 一方이 再割引 適格業體이거나 信用保證機關이 保證한 어음에 대하여는 原則的으로 信用으로 取扱<sup>11)</sup>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1990年 9月 1日부터 債務不履行者 名簿制度(民事訴訟法 第524條)가 施行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辨濟能力이 있으나 故意로 債務를 履行하지 않는 債務者의 名單을 該當法院 및 債務者의 本籍地에 備置하여 公示함으로써 經濟活動에 있어서 各種 制約을 받도록 하는 一種의 破產制度로서, 信用社會 定着을 위한 進一步한 制度라고 할 수 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確定判決後 6月 以內에 債務者가 債務를 履行하지 않으면 強制執行을 할 수 있는 債權者가 法院에 “債務不履行者 登載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辨濟能力 有無判定을 위하여 債務者가 自身の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法院에 提出하도록 하는 “財産明示制度”를 導入하고 同 目錄에 脫漏시킨 財産이 發見되는 경우에는 刑事處罰(3年 以上の 懲役 또는 5백만원 以上の 罰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9) “通貨信用政策呼應度”項目은 成果評價 中 5%이며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貸出 取扱實績”은 이 中 5%가 反映되어 全體經營評價의 0.25%를 反映하고 있다.

10) 中小企業에 대한 與信運用細則 第10條(韓國銀行 總裁 規程).

11) 上業어음 割引 및 再割引 取扱規程 第2條 第2項(金融通貨運營委員會 規程).

## 第 4 章 信用貸出 擴大의 制約要因

信用貸出이 이루어지려면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우선 借入者가 스스로 형성한 信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借入者의 信用을 金融機關이 調査·評價할 수 있어야 하며, 信用評價結果를 토대로 金融機關이 借入者의 信用度에 상응하게 貸出 條件을 伸縮的으로 定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企業의 歷史가 日淺하여 信用蓄積이 잘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企業環境의 급변으로 經營도 不安定한 狀態에 있고, 現實의으로도 情報의 非對稱性이 크기 때문에 金融機關의 信用評價가 어려운 狀況에 있었다. 金融機關 입장에서도 그동안 資金超過需要 狀態가 持續되고 金利가 낮은 水準으로 規制되어 왔기 때문에 危險을 감수하면서 信用貸出을 할 誘因이 없어 信用貸出을 忌避하는 등 근본적으로 信用貸出이 어려운 狀況에 있었다.

本章에서는 그동안 信用貸出을 어렵게 하고 있는 要因을 金融構造的 側面과 金融外的 側面으로 나누어 具體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第 1 節 金融構造的 側面

우리나라는 그동안 資本蓄積이 不充分한 狀況에서 政府主導로 中央銀行의 本源通貨 供給을 통한 強制貯蓄方式으로 經濟開發을 推進해 왔기 때문에 金融市場은 政策資金 爲主의 與信割當, 低金利政策 등으로 慢性的인 資金超過需要 狀態가 持續되어 왔다.

이에 따라 擔保를 提供하고 貸出을 받고자 하는 企業조차도 貸出을 받기 어려운 狀況이 되었고, 金融機關은 企業의 事業性, 財務構造 등 企業內容이나 事業展望보다는 貸出資金의 安定性을 重視하여 資金을 運用함으로써 굳이 危險을 감수하면서 信用貸出을 할 誘引이 없었다.

現在 比較的 信用貸出이 이루어지고 있는 大企業의 경우에도 初期에는 주로 政府의 政策的인 決定에 따라 信用割當方式을 통하여 信用貸出이 이루어 졌고, 어느 정도 이상의 規模로 貸出이 增加된 以後에는 既存 貸出金의 不實化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擔保 不足分에 대하여 系列社의 相互支給保證 等を 통하여 信用으로 追加貸出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大企業에 대한 信用貸出도 金融機關이 信用評價를 基礎로 한 合理的인 與信審査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金融機關의 貸出審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信用分析·評價技法이 發達할 餘地가 없었는바 이를 몇 가지 原因別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慢性的인 超過資金 需要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金融市場은 政策資金 爲主의 與信割當, 低金利政策 等으로 金融機關에 대한 貸出需要는 항상 超過狀態에 있었고, 借入者는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한 資金을 市場에서 運用하는 경우 超過利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을 받는 것 自體가 特惠가 되고 借入需要가 增加되어 왔다.

資金의 超過需要는 限界企業의 無制限的인 資金需要, 硬直的 通貨管理에 따른 不必要한 豫備的 資金需要 等에 따라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借入者는 金融機關을 選擇할 餘地가 없었고 金融機關은 貸出運用에 있어 企業의 信用分析·評價를 통하여 信用貸出을 擴大함으로써 優良顧客을 誘致하기 위한 努力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債權確保 側面에서 擔保貸出 慣行이 持續되어 왔다.

이러한 擔保貸出 慣行으로 인하여 모든 企業에 一般的으로 擔保를 要求하게 되어 信用도가 높고 健全한 企業도 金融機關의 信用評價가 제대로 되었다면 節

減할 수 있었을 費用까지 負擔하게 되는 等 國民經濟的 側面에서 全般的인 金融 費用 負擔增加가 招來되었다.

## 2. 金利規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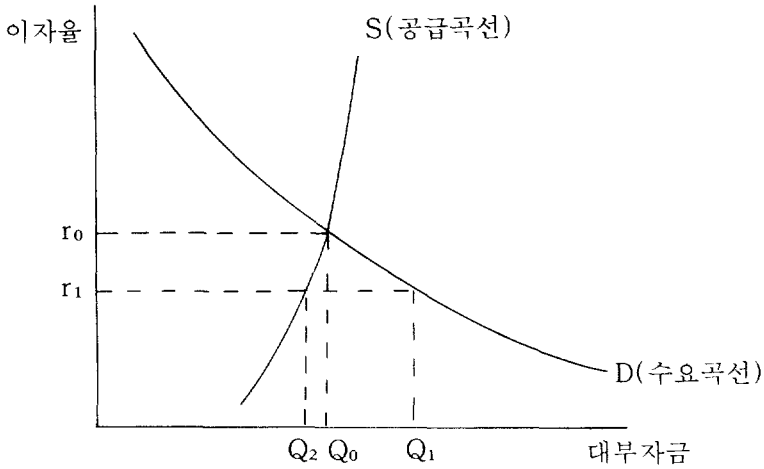
그동안 通貨政策當局이 企業의 金融費用 負擔輕減을 통한 對外 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人爲的으로 金融機關의 金利를 낮은 水準으로 規制해 옴에 따라 資金의 超過需要를 誘發하게 되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貸出資金의 供給曲線을 S(通貨管理을 위한 國內與信規制로 短期的으로는 事實上 金利에 대하여 地극히 非彈力的)라 하고, 需要曲線을 D(金利變動에 彈力的이라고 假定)라고 하면 市場利子率은  $r_0$  이어야 하나  $r_0$ 보다 낮은  $r_1$ 으로 規制하는 경우 貸出金에 대한 超過需要가  $Q_2 - Q_1$ 만큼 存在하게 된다.

劃一的인 金利規制는 金融機關이 貸出時 危險度에 상응한 差等金利 適用을 어렵게 하여 信用貸出을 制約하게 된다. 金融機關은 貯蓄者의 財産을 保護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므로 基本的으로 危險回避者(risk averter)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借入者의 信用이 낮은 경우에는 危險度에 상응한 危險補償(risk premium)이 附加된 金利가 適用되어야 貸出이 可能<sup>1)</sup>하다. 그러나 劃一的인 金利規制는 信用度에 따른 金利差等を 어렵게 만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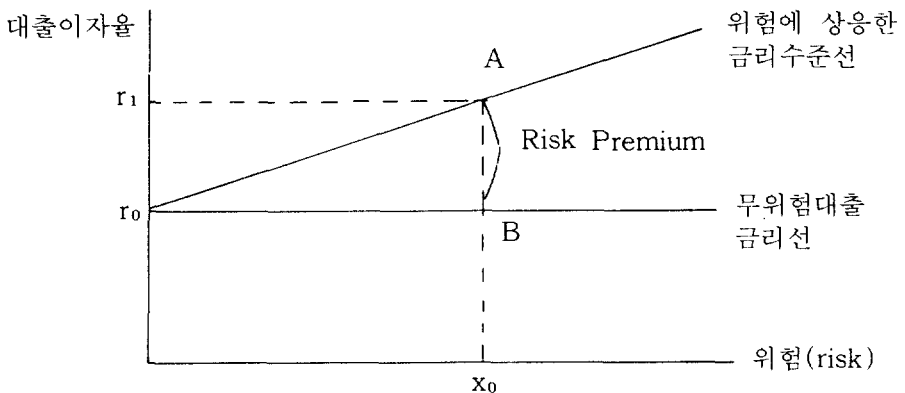
1) J. E. Stiglitz (1993)는 適用金利가 높아지면 債務不履行 危險이 높아져 期待收入이 줄어들게 되므로 超過需要가 있더라도 金融機關이 金利를 어느 水準 以上으로는 引上하지 않고 信用危險이 큰 企業에게는 貸出을 하지 않는 등 信用割當을 하고 擔保를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림 4] 金利規制下에서의 資金需給



[그림 5]에서 無危險 貸出의 利率을  $r_0$  라 하고 X企業의 信用度에 상응한 危險이  $x_0$  라고 하면 X企業에 대한 貸出 利率은 A B만큼의 危險補償(risk premium)이 附加된  $r_1$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金利가  $r_0$  水準에 規制되어 있으면 基本的으로 貸出이 어렵게 되며 불가피하게 貸出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危險을 補填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한 擔保를 取得하거나 다른 方法으로 補償을 要求하게 된다.

[그림 5] 危險에 상응한 貸出利率 決定 模型



따라서 이 경우에 金融機關은 安定性を 確保하기 위하여 擔保를 取得함으로써 擔保貸出 慣行이 一般化될 수밖에 없고, 이에 더하여 金利 以外の 補償, 즉 낮은 수준의 金利가 적용되는 拘束性預金이나 外換去來 等の 強制를 통한 手數料 收入의 確保를 도모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擔保貸出 慣行으로 信用度가 높은 企業에게도 擔保를 要求하고 金利 以外の 補償을 要求하고 있어 全般的인 金融費用 負擔를 增加시키고 있다<sup>2)</sup>.

最近 金利自由化 推進에 따라 現在는 政策資金 以外の 貸出金利는 自由化되었으나 아직 信用度에 따른 差等金利 適用은 未洽한 實情이다.

### 3. 企業 財務構造의 脆弱

그동안의 高度 成長過程에서 우리나라 企業은 外部借入을 통한 規模擴大 爲主의 經營을 해옴에 따라 借入依存도가 높고 財務構造가 매우 脆弱한 狀態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 企業(製造業)의 負債比率은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臺灣 등에 비하여 2~3배, 日本보다 1.5배 가량 높으며, 賣出額 對比 金融費用比率은 상대적으로 높은 國內金利를 反映하여 約 3배 水準에 달하고 있다.

높은 水準의 金融費用 負擔은 原價側面에서 우리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는 要因<sup>3)</sup>이 되고 있으며 높은 借入依存도는 元利金 償還을 위한 新規 借入 需要를 誘發하여 財務構造를 더욱 惡化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財務構造가 脆弱한 企業일수록 投機的 經營이 되기 쉽고 財務危

---

2) 이러한 현상은 金融自由化가 이루어져 競爭的인 金融市場이 되면 情報의 非對稱性으로 逆選擇(adverse selection)이 발생하게 되어 金融機關의 貸出資金의 危險度を 높이는 원인이 된다.

3) 우리나라 製造業의 1992년도 賣出額 營業利益率은 6.6%로서 日本의 4.2%보다 높으나 金融費用을 감안한 賣出額 經常利益率은 1.5%로서 日本의 3.4%보다 낮은 水準이다.

〈表 11〉 主要國의 製造業間 財務構造 比較

(단위 : %)

|                     | 韓 國    |       | 美 國<br>(1991) | 日 本<br>(1991)       | 臺 灣<br>(1991) |
|---------------------|--------|-------|---------------|---------------------|---------------|
|                     | 1992   | 1993  |               |                     |               |
| 自己資本比率              | 23.8   | 25.3  | 40.4          | 31.2 <sup>1)</sup>  | 50.5          |
| 負債比率                | 319.72 | 294.9 | 147.3         | 221.0 <sup>1)</sup> | 97.9          |
| 借入依存度 <sup>2)</sup> | 47.2   | 46.8  | 29.4          | 34.1                | 27.2          |
| 金融費用/賣出額            | 6.3    | 5.9   | —             | 2.2                 | 2.4           |

註 : 1) 日本의 경우에는 資産再評價制度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企業의 自己資本比率 및 負債比率와 比較할 때에는 이를 勘案하여야 함.

2) (長·短期借入金 + 社債) / 總資本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94.

險을 債權者에게 轉嫁시킬 수 있기 때문에 自己資本調達 等 直接金融方式보다는 借入을 통한 資金調달을 選好할 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財務構造는 더욱 나빠지고 財務危險 및 經營危險은 더욱 높아져 信用度가 낮아짐으로써 信用貸出을 더욱 어렵게 한다.

銀行의 경우에는 性格上 長期貸出이 많아 企業將來에 대한 不確實性이 보다 높아져 信用貸出이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債權保全을 위하여 擔保를 要求할 必要性이 높아진다. 이러한 狀況에서 政策當局이 銀行으로 하여금 信用貸出을 하도록 強制하면 實際로 信用貸出은 擴大되지 않으면서 拘束性預金을 要求하는 等 變則處理가 發生하고 資金借入이 不必要한 比較的 健全한 企業에 貸出을 集中시킴으로써 正작 借入이 必要한 企業에게는 貸出이 이루어지지 않는 等 資金配分이 非效率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信用貸出의 어려움은 財務構造가 相對的으로 脆弱한 中小企業에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現在의 脆弱한 財務構造 狀態를 감안할 때 現實的으로 信用貸出의 擴大가 可能한 것인가 하는 데에는 疑問이 提起된다.

〈表 12〉 製造業 規模別 財務構造(1993年 基準)

(단위 : %)

|        | 大企業   | 中小企業  | 全體企業  |
|--------|-------|-------|-------|
| 自己資本比率 | 26.8  | 20.5  | 25.3  |
| 負債比率   | 273.5 | 388.1 | 294.9 |
| 借入依存度  | 47.7  | 43.7  | 46.8  |

資料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94.

#### 4. 信用評價의 어려움

信用評價란 借入者가 負債를 所定期日內에 償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 「償還意志」(willingness to pay)와 負債의 元利金 償還에 必要한 資金을 正常的인 企業活動을 통하여 調達할 수 있는가 하는 「償還能力」(ability to pay)을 判斷하기 위하여 이에 關聯된 情報를 調査·分析·評價하는 一連의 過程을 意味한다. 따라서 信用評價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金融機關이 우선 借入者에 대한 精確한 情報를 調査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調査된 情報資料를 分析·評價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傳統的으로 남을 좋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美德으로 看做<sup>4)</sup>하고 金融機關 任職員이 借入者와 交際하는 것을 不道德視하는 등 否定的 思考가 一般化되어 있어 金融機關이 借入者의 人的要素인 償還意志를 把握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節稅 等を 目的으로 財務諸表를 粉飾하거나 簿外處理함으로써 會計的

4) 따라서 僞證을 싫어하는 西歐의 開放社會에서 適用되는 信用思想이 우리나라에 適用되기는 매우 힘들다(전용기, 『金融機關의 信用分析에 대한 考察』, 保證月報, 信用保證基金, 1988. 4, p. 21).

情報가 正確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非會計的 情報도 大部分 企業秘密로 取扱하여 保安을 함으로써 未來의 現金흐름을 把握하기가 어려운 等 償還能力에 關한 情報도 매우 不足한 實情이다.

한편, 金融機關의 情報分析 評價能力도 專門性 不足으로 낮은 實情이며 評價 專門會社도 現在 3個社가 있으나 評價 能力에 限界가 있고 金融機關의 利用도 低調한 狀態에 있는 等 信用評價 機能이 未洽한 狀態이다.

## 第 2 節 金融 外的 要因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慣行이 定着되기 위해서는 먼저 國民經濟內에 健全한 信用秩序가 確立되어야 한다. 信用秩序는 國民의 意識水準이나 文化的 背景, 法制度, 金融市場의 與件 等に 影響을 받아 形成되는 것으로서 政策當局의 制度 變更이나 金融面에서의 政策推進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信用秩序 形成을 어렵게 하고 있는 要因을 몇 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意識水準 및 文化的 背景

우리 一部 企業人의 意識은 아직도 自己資本보다는 他人資本에 依存하여 事業하는 것을 當然한 것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金融機關에서 借入을 많이 할수록 能力이 있다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또한 企業倒産時 金融機關 借入金은 갚지 않아도 되고, 企業은 亡해도 企業主와는 關係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等 信用에 대한 一般의 意識水準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關聯된 意識 또는 行態 몇 가지를 例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企業의 경우 銀行借入金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資金餘裕가 있어도 既存 借入金은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銀行借入金이 많을수록 不

況期에는 政策的으로 支援을 받을 수 있고, 資金을 餘他部門에 運用하여 銀行貸出金利 以上の 收益을 얻는 것이 可能하며, 향후 資金 必要時 新規貸出을 받을 保障이 없고 新規로 貸出을 받는 경우에 또 다시 附帶費用이 發生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金融機關 借入金은 稅制上 資金出處의 根據도 되고 損費로도 處理<sup>5)</sup>할 수 있기 때문에 金融機關 借入을 더욱 選好하게 된다.

둘째, 銀行에서 貸出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自身の 貸出要件具備 與否와는 關係없이 銀行이 大企業은 優待하면서 中小企業에게는 불리하게 事務를 處理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意識은 金融資金을 政府의 資金과 동일시함으로써 信用貸出의 경우에 더욱 澎湃되어 있다.

예를 들면 少額貸出을 갚지 않아 銀行이 法的 處理를 하면 大企業은 빛이 많아도 追加貸出을 해주면서 弱者에게만 苛酷하게 對한다고 不平하고, 大企業에 대해서는 巨額의 資金을 信用으로 貸出해 주면서 中小企業이나 家計는 擔保가 없으면 貸出을 안 해주고 있어 不公平하고 金融慣行이 잘 못되었다고 批判하는가 하면 企業 倒産時 同 企業의 債權者 및 從業員에 대한 資金決濟를 去來銀行에서 處理해 줄 것을 要求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負債 依存도가 높은 企業일수록 보다 投機的 投資를 선택할 可能性이 높다. 왜냐하면 株式會社의 有限責任이라는 特性上 別면 자기 것이고 亡하면 그만이라는 思考 때문이다.

넷째,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信用도가 높다고 判斷되는 階層을 對象으로 하여 운영되는 신용카드회사의 延滯率<sup>6)</sup>이 1993년말 현재 국민카드 8.4%, 비씨카드 10.2%, 외환비자카드 10.8%, 삼성카드 12.9%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一般國民의 信用에 대한 意識水準이 아직도 매우 낮다는 것을

5) 金融機關 借入金利子の 損費處理로 增資等 資本調達보다 借入이 유리하게 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의 시정을 위한 稅法改正 論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 延滯金額 / 카드代給金殘額.

反映하고 있는 例라고 할 수 있다.

## 2. 信用貸出에 대한 否定的 視角

金融資金에 대한 慢性的인 超過需要와 企業의 脆弱한 財務構造에 비추어 信用貸出은 特惠라는 認識이 形成되었고, 이러한 認識은 金利規制로 實勢金利보다 낮은 貸出金利가 適用됨에 따라 더욱 澎湃하게 되었다. 한편, 信用으로 취급한 貸出이 不實化되는 경우에 金融機關 內部的으로는 取扱者에 대한 懲戒 또는 辨償責任이 賦課되었고 監督當局에서도 預金者 保護를 위한 金融機關의 健全性 維持 次元에서 當該 取扱者를 問責하도록 要求하는 경우가 一般的이었으며, 巨額 與信의 不實化時에는 關聯者에 대하여 背任罪 등 刑事上 處罰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金融機關의 與信取扱 擔當者들은 特別한 事由가 있거나 免責되지 않는 한 事後責任을 意識하여 信用貸出 取扱을 忌避할 수밖에 없었다<sup>7)</sup>.

言論이나 政治圈에서도 金融機關의 公共性을 強調하는 立場에서 信用貸出이 不實化되는 경우에는 金融機關 任職員과 企業 關係者間의 非理 또는 癒着 疑惑을 提起하는 등 否定的 視角이 蔓延되어 있다.

그동안 信用貸出이 不振한 것이 基本的으로는 借入者의 信用이 낮고 信用評價가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事後 責任問題 때문에 實際 金融機關 窓口에서 消極的일 수밖에 없었던 點도 하나의 原因이 되었다.

그러나 貸出取扱者의 事後責任을 緩和하는 경우에 貸出取扱者와 借入者와의 結託에 의한 審査疏忽 또는 不當貸出 등 道德的 危害(moral hazard)의 發生 可

---

7) 1976년 水害發生時 安陽천변에 거주하던 罹災民의 救護를 위한 住宅 및 生業 資金과 1978년 生活必需品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한 生必品 生産業體에 대한 支援資金을 韓國銀行의 資金支援을 통하여 信用으로 貸出하도록 하였으나 實際 金融機關 窓口에서 關聯者의 事後不實 發生時 責任問題 때문에 貸出이 안되자 大統領의 指示覺書로 同 貸出에 대하여는 사후에 監督當局이나 搜查當局에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후에야 貸出 取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代表的인 事例이다.

能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3. 法制面 等에서의 不利

우리나라 法制上 民法 및 會社整理法 等に 의거 擔保附債權은 特定擔保物件 處分金額으로 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으나, 信用貸出과 같은 無擔保債權은 優先辨濟權이 認定되지 않는다.

또한 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를 취하는 경우에 債務辨濟計劃을 作成함에 있어 金融機關의 擔保附債權 以外의 一般債權은 少額債權을 保護하는 次元에서 餘他 債權보다 後順位 辨濟 債權으로 分類하여 作成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므로 債權保全 側面에서 擔保貸出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劣位에 있다.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側面에서도 信用貸出 取扱擴大를 誘引하는 制度는 未洽하고 오히려 信用貸出이 不實化되어 金融機關의 收支가 惡化되는 경우에 經營評價 등에서 不利하게 取扱하는 等 健全性 爲主로 運用되어 옴으로써 信用貸出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金融機關 內部的으로도 企業과의 去來에 있어 借入者와의 結託에 의한 不正 또는 道德的 危害(moral hazard)를 防止하기 위하여 窓口職員의 循環補職制를 實施함으로써 去來企業의 會計帳簿 以外의 非公式的인 情報의 把握을 어렵게 하여 信用評價를 제약하고 있다.

## 第3節 信用貸出 擴大의 制約要因에 대한 綜合 判斷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信用貸出을 制約하고 있는 要因은 金融機關의 行態와 業務能力, 借入者의 信用度 및 意識水準, 金融市場與件 等 全般的인 部門에 걸쳐 散在해 있다. 그러므로 信用貸出이 擴大되기 위하여는 根本的이고 全般的인 改善이 이루어져 信用社會가 構築되어 借入者의 信用이 높아지고 이러한 借

入者の 信用을 金融機關이 正確하게 調査·評價<sup>8)</sup>할 수 있어야 하며 信用度에 따라 差等金利의 適用 等 貸出條件의 差等化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信用貸出의 擴大를 制約하고 있는 보다 根本的인 要因은 未發達된 우리 金融市場의 水準과 借入者의 낮은 信用度 내지 不合理的 意識이라고 判斷되며, 이러한 狀況에서 金融機關의 業務나 慣行改善을 통하여 信用貸出이 擴大되기를 期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最近 各界에서 信用貸出의 擴大를 위하여는 金融自由化가 推進되고 金融機關의 業務慣行이 改善되어야 한다는 主張은 部分的인 妥當性은 있으나 制約要因의 우선순위면에서 볼 때 올바른 指摘이 아니다. 오히려 信用貸出 擴大를 위하여 金融機關의 慣行 改善만을 一方的으로 推進하는 경우에는 실제 信用貸出은 擴大되지 않으면서 政策의 信賴度만 낮추는 結果를 초래할 可能性이 높다.

---

8) D. Jaffe, & J. E. Stiglitz(1990)는 情報은 公共財(public good)의 性格을 갖기 때문에 不完全할 수밖에 없고 金融機關이 正確하고 充分한 情報를 얻을 수 없거나 얻을 수 있더라도 그 費用이 크다고 한다.

## 第 5 章 信用貸出 擴大 方案

政府는 金融機關이 自律的으로 信用貸出을 擴大하도록 金利自由化 等 金融自由化의 推進을 통하여 金融市場에서 實質的인 競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與件을 造成하고, 通貨管理面에서 資金需給의 安定을 기하는 政策的 努力을 傾注해 나가는 동시에, 金融機關 監督側面에서의 誘引을 擴大해 나감으로써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擴大 努力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企業 스스로도 信用이 企業의 생명이라는 認識 아래 信用을 쌓아 나감으로써 情報의 非對稱性을 縮小해 나가야 實質的으로 信用貸出이 擴大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中小企業에 대한 政策도 無條件的인 支援擴大가 아니라 스스로 努力하는 만큼 支援을 하는 體制로 轉換되어야 하고 現在와 같이 金融機關側面에서의 一方的 問題解決方式이 아닌 企業 自體의 問題解決 努力을 並行시키는 方式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따라서 金融運用은 市場原理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政府의 政策的 支援은 成長可能性이 높고 經營이 健實한 企業에 대하여 構造的 不利를 補完하는 方式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信用貸出擴大는 金融市場에서의 情報의 非對稱性이라는 根本的인 制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性質上 短期間內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金融自由化 및 金融市場 開放의 推進으로 短期的으로는 中小企業의 金融機關으로부터의 資金調達上 隘路가 加重될 것으로 展望되므로 信用貸出 擴大 努力과 함께 당분간은 中小企業의 擔保力을 補完하기 위한 信用保證 擴大가 現實的인 政策課題가 될 것이다.

# 第 1 節 金融政策面에서의 對策

## 1. 金融自由化的 推進

金融自由化가 推進되면 金融機關間 競爭이 높아져 金融機關이 優秀 顧客 確保 次元에서 貸出서비스 改善 努力을 加速化해 나갈 것이며, 이 過程에서 信用 貸出이 점차 擴大될 것으로 期待된다<sup>1)</sup>.

최근 金融市場이 安定되고 超過資金 需要가 縮小<sup>2)</sup>됨에 따라 각 金融機關 스스로 信用貸出을 擴大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韓一銀行의 경우 個人에 대하여 物的擔保나 保證이 없이 信用만으로 貸出去來 約定書에 한번 署名만 하면 즉시 最高 3천만원까지 貸出을 받을 수 있는 소위 『한번 싸인 信用貸出』 制度를 1994年 2月 1日부터 施行(〈表 13〉 참조)하고 있고, 하나은행도 유사한 貸出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制度는 곧 各 銀行에 波及될 것으로 보이며 그 對象도 企業部門까지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즉, 企業의 경우에는 當座貸出 등의 限度를 設定하여 그 範圍內에서는 수시로 信用으로 借入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信用保證機關도 最近 保證要件을 緩和하고 節次도 簡素化하는 등의 措置를 취하고 있다.

---

1) 日本의 경우 1985年 이후 預金金利自由化가 本格化되고 金融의 證券化·國際化 趨勢가 進展됨에 따라 大企業의 銀行離脫現象이 나타나면서 銀行들이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을 擴大하는 戰略을 推進하고 있다.

2) 1993년 하반기 이후 貸出需要가 줄어들면서 일부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貸出「세일」에 나서고 있고, 餘裕資金을 有價證券에 投資하는 등 資金運用에 腐心하고 있다.

〈表 13〉 韓一銀行의 信用貸出 基準表<sup>1)</sup>

| 區 分                         | 貸 出 限 度                 | 3,000萬圓<br>(A等級)           | 2,000萬圓<br>(B等級) | 1,000萬圓<br>(C等級) |
|-----------------------------|-------------------------|----------------------------|------------------|------------------|
| 公 務 員                       | 一般·教育職·軍務員等             | 3級 以上                      | 4級               | 5級               |
|                             | 警察職 消防職                 | 總警 以上                      | 警正               | 警監               |
|                             | 軍 人                     | 將星級                        | 大領               | 中領               |
|                             | 判·檢事                    | 判事·檢事                      |                  |                  |
| 議 員 職                       | 國會·地方議會議員               | 國會·地方<br>議會議員              |                  |                  |
| 政府投資機關<br>等                 | 政府投資·出捐機關等              | 常勤任員                       | 部長級 以上           | 次長               |
|                             | 公共法人體, 研究團體,<br>經濟人聯合會等 |                            | 部長級 以上<br>研究員 以上 | 次長               |
|                             | 其他 非營利機關                | 代表者                        | 任員               |                  |
| 公共·非營利<br>性格의 國際<br>機關·外國機關 | 國際機關                    | 代表者                        | 部長級 以上           |                  |
|                             | 外國機關                    | 代表者                        | 部長級 以上           |                  |
| 企 業 體                       | 上場 大企業體                 | 任員                         | 部長級 以上           | 次長               |
|                             | 非上場 大企業體                |                            | 任員               | 部長級 以上           |
| 教 育 界                       | 初·中·高校                  | 校長·獎學官<br>·研究官             | 校監·獎學士<br>·研究士   | 主任教師             |
|                             | 大學                      | 正教授 以上                     | 副教授 以上           | 助教授 以上           |
|                             | 學校法人                    |                            | 局長級 以上           |                  |
| 自 由 職 業                     | 醫師(漢醫師 包含)·辯護士          | 45歲 以上                     | 40歲 以上           | 30歲 以上           |
|                             | 公認會計士·稅務士等              | 資格取得<br>15年 以上             | 資格取得<br>10年 以上   | 資格取得<br>5年 以上    |
|                             | 國家技術資格 取得者              |                            | 資格取得<br>15年 以上   | 資格取得<br>10年 以上   |
| 言 論 社                       | 主要日刊紙·放送·通信             | 部長級 以上                     | 次長               | 經歷 5年<br>以上 記者   |
| 醫 療 機 關                     | 綜合病院의 事務職               |                            | 部長級 以上           |                  |
|                             | 綜合病院의 看護士               |                            | 部長級 以上           |                  |
| 其 他                         | 營業店長이 認定한 者             | 上記 以外의 者로서 營業店長이 특별히 認定한 者 |                  |                  |

註：1) 1993. 2. 1 施行

資料：韓一銀行

## 2. 金利 自由化

政府는 『金利自由化 4段階 計劃』을 推進中에 있다. 1段階는 1991年 11月, 2段階 自由化措置는 1993年 11月에 實施되었다. 이러한 金利自由化가 成功的으로 定着되면 金利의 價格機能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金融資金이 보다 效率的으로 配分되는 한편 金融機關間 競爭이 促進되어 經營合理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信用은 貸出債權의 危險을 나타내는 尺度로서 期待收益率인 金利에 反映된다. 따라서 金融機關間 競爭이 높아지면 金融機關은 借入者의 信用을 評價하여 擔保設定 有無를 決定하고 擔保有無에 따라 金利를 差別的으로 適用하는 方案을 講究하게 될 것이며, 信用貸出 取扱時에도 信用도에 따라 金利를 差別化할 것으로 展望된다.

差等金利 適用時의 貸出利子率 決定 模型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R_{it} = R + \alpha_i + \beta t + \text{非價格 條件 調整}$$

$R_{it}$  : 個別顧客  $i$ 에 대한  $t$ 期間 貸出의 利子率

$R$  : 基準金利(一般的으로 金融機關의 優待金利)

$\alpha_i$  : 個別顧客  $i$ 의 信用危險 「프리미엄」

$\beta t$  : 貸出期間  $t$ 에 相應하는 純粹한 期間 「프리미엄」

(貸出資金의 調達財源 構造 等)

非價格條件 : 擔保有無, 擔保의 種類, 貸出金償還方法, 利子計算方法 等

이와 아울러 信用貸出取扱 擴大에 따라 豫想되는 不實債權 增加에 對備하여 差等金利適用에 따른 追加收益을 貸損充當金으로 追加設定하는 等の 방안도 강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도 金融機關의 貸出金利를 企業의 信用도에 따

라 差等하여 適用하고는 있으나 이는 各 銀行別로 거의 공통적으로 단순히 貸出 對象의 信用評價 結果 算出된 信用評點에 따라 機械적으로 適用하는 것으로서 信用貸出을 하기 위하여 信用評價를 하고 信用度에 따라 差等 適用하는 것이 아니다.

〈參考〉 金利自由化 計劃(新경제 5個年 計劃)

- 第1段階 : 1991年 11月 施行
  - 銀行의 CD·當座貸越, 短期金融會社의 企業어음割引 等
- 第2段階 : 1993年 11月 施行
  - 財政支援 및 韓國銀行再割引對象 貸出을 除外한 第1·第2金融圈 與信
  - 第1·2金融圈의 2年 以上 長期受信金利
- 第3段階 : 1994年 ~ 1995年
  - 短期市場性 商品의 自由化幅 擴大(發行限度 및 滿期 等)
  - 商業어음割引 等 韓銀 再割引對象 貸出金利
  - 第1·第2金融圈의 要求拂預金을 除外한 受信金利
  - 利差補填을 하는 金融資金 貸出金利(特別設備資金 等)
- 第4段階 : 1997年
  - 段階的인 要求拂預金金利 自由化 方案 마련
  - 短期市場性 商品에 대한 制限 撤廢 檢討

3. 通貨管理에 있어서 不確實性的의 除去

우리나라의 通貨管理의 問題點은 다음 몇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總通貨(M<sub>2</sub>)를 中心指標로 하여 事前에 年間 目標을 設定하고 目標達成 爲主로 管理함으로써 매우 硬直的으로 運用되고 있다.

둘째, 通貨管理도 金利보다는 通貨量 調節에 置重되어 있다.

셋째, 流動性을 調節하는 方式을 再割引, 支準, 公開市場操作 等 間接規制手段에 의하지 않고 還買條件附 債券(RP), 通貨安定證券 等の 強制賣買方式에 依存함으로써 金融機關의 資金運用的 豫測可能性이나 安定性을 沮害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問題들은 政策金融의 過多 및 外國人 證券投資 擴大로 인한 海外部門의 通貨供給增加 等에 따라 不可避한 側面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通貨政策當局의 通貨豫測이나 管理水準이 낮은 점과 실제 政策 執行過程에서의 硬直的인 運用行態에 기인된 면이 크다.

通貨管理가 硬直的이고 直接規制를 주로 使用하는 경우에는 金融市場에서의 資金需給動向에 相應한 通貨管理가 되지 못하고, 급격한 通貨還收·增加로 金融機關의 資金運用이 不安定해지고 예상치 못한 通貨還收에 대비하여 資金을 保有하게 되어 불필요한 資金需要를 增加시킨다.

따라서 通貨管理方式의 改善과 伸縮的인 通貨管理<sup>3)</sup>를 통하여 金融市場에서의 豫測可能性을 높임으로써 不必要한 資金需要를 抑制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金融市場의 資金需給의 均衡을 바탕으로 金融機關間 競爭이 提高되어 信用貸出擴大가 促進될 것이다.

#### 4. 制度面에서의 誘引 擴大

金融監督政策側面에서 金融機關이 信用貸出을 誘引하기 위한 몇 가지 政策代案을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銀行의 貸出基準에 信用貸出 取扱實績을 反映하는 것이다.

韓國銀行의 再割引 및 貸出의 金融機關別 總額限度制와 流動性 調節資金 支援基準에 信用貸出 取扱 實績을 勸案할 必要가 있다.

---

3) 最近 韓國銀行이 金利動向을 감안하여 從前보다 伸縮的으로 通貨를 管理함에 따라 資金市場에서는 不均衡이 많이 是正되고 있다고 判斷된다.

둘째, 銀行監督院의 金融機關 評價時 反映하는 方法이다.

現在 韓國銀行 銀行監督院의 一般銀行 經營評價基準은 <表 14>와 같다.

<表 14> 一般銀行 經營評價 基準

(단위 : %)

|                   | 評價項目     | 評價內容                                |
|-------------------|----------|-------------------------------------|
| 計量<br>指標<br>(70)  | 收益性(30)  | 總資本利益率, 營業收益, 經費率 等 5개 項目           |
|                   | 健全性(20)  | 自己資本比率, 不健全 與信比率 等 5개 項目            |
|                   | 流動性(8)   | 預·貸率 等 2개 項目                        |
|                   | 內部留保(12) | 直接比率 等 3개 項目                        |
| 非計量<br>指標<br>(30) | 經營管理(10) | 資產負債管理, 金融事故 等                      |
|                   | 公共性(20)  | 中小企業支援, 系列企業群 與信管理,<br>金融改善業務 推進 實績 |

이 중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貸出 取扱實績은 “公共性” 項目 評價時에 일부 (0.25%) 감안하고 있으나 매우 微弱하다. 향후 經營評價基準을 變更하는 경우 反映度を 높이고 經營評價 結果를 店鋪行政·增資政策 等に 積極 反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第 2 節 金融機關의 業務改善

金融의 自律化·開放化推進은 필연적으로 國內外 金融機關間의 競爭을 促進 시킬 것이며, 金融機關間 競爭이 促進되면 金融機關이 顧客의 다양한 金融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金融商品을 개발하고 고객에 필요로 하는 시기에 즉시 資金을 供給할 수 있도록 하는 方向으로 制度를 改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金融機關 스스로 借入者의 信用度を 評價하여 貸出條件을 差等 適用하고 不實企業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의 經營改善을 推進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입각하여 信用貸出 擴大를 위하여 改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金融機關의 業務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信用貸出 取扱基準의 標準化·客觀化

현행 信用貸出 取扱基準은 各 銀行別 職務專決規程上 中小企業貸出 및 家計貸出 等 特定貸出科目에 局限하여 職位別 等으로 基準을 提示하는 데 그치고 있어 普遍的으로 適用되는 基準이나 節次가 未備되어 있으며 上記 基準도 實際 適用時에는 本店의 事前 諒解를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適期에 貸出할 수 있는 體制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金融機關은 고객이 必要한 시기에 貸出이 가능하도록 信用貸出 取扱基準의 標準化·客觀化를 推進<sup>4)</sup>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 경우 金融機關은 顧客의 信用度 및 貸出 種類別로 適用基準을 마련하여 運用할 必要가 있다.

## 2. 貸出審査 機能의 擴充

貸出審査는 信用分析에 의하여 파악된 危險의 程度와 金融機關 內部的 與信方針 등을 勘案하여 이루어지는 高度의 價値判斷 行爲이다. 따라서 이러한 貸出審査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貸出審査役의 專門化와 信用分析과 貸出審査의 有機的인 運用이 필요하다.

### (1) 貸出審査役 制度 運用의 內實化

信用貸出 慣行이 定着되기 위한 先行條件 중의 하나는 專門審査要員의 養成인데 現行 貸出審査役 制度는 貸出審査役의 實質權限未洽, 循環補職(평균 3년

---

4) 최근 市中銀行을 중심으로 制限的이기는 하나 이러한 取扱基準이 設定되는 趨勢에 있다.

근무) 等으로 專門化 水準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金融機關의 貸出審査機能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專門性이 높은 貸出審査役을 養成하고 貸出專決 限度를 賦與하는 等 責任與信 體制를 確立하는 한편, 事後評價制를 強化하고 評價結果에 따라 人事上·業務上 差等하는 方案의 導入이 필요하다.

### (2) 先進 金融技法의 活用 및 教育訓練 擴大

危險分析制度 및 顧客收益性 分析制度 等과 같은 高度의 金融技法을 金融機關의 狀況에 맞도록 개발·활용하고, 信用分析業務에 대한 教育 및 研修를 強化하는 等으로 새로운 分析技法 等を 계속 開發해 나가야 한다.

### (3) 信用分析和 貸出審査의 有機的 運營

현재 金融機關의 信用分析 및 貸出審査는 制度的으로는 專門化되어 있으나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形式的인 信用分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受動的이고 形式的인 信用分析 및 審査慣行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合理的인 貸出審査가 이루어지도록 貸出審査와 信用分析의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하고 專門家를 育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信用評價 方式의 改善

현재와 같은 財務諸表 爲主의 評點表(scoring model)에 의존한 信用分析은 客觀性이 있고 간편하므로 수많은 企業을 對象으로 하고 審査機能이 미흡한 金融機關 입장에서는 適合한 方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過去 一定時點의 財務數值 위주의 平面的, 定量分析에 그칠 수밖에 없고, 産業 및 企業의 質的特性에 대한 分析이 缺如되어 信用評價로서는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의 信用分析評價는 對象企業의 質的特性에 맞는 主觀的 要素를

충분히 反映하여 이루어지도록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 4. 擔保提供 制限 制度(negative pledge clause)<sup>5)</sup> 導入

信用貸出債權은 擔保附債權과는 달리 借入者의 破産·強制執行 또는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計劃 作成時 優先 辨濟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問題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金融機關이 信用貸出 取扱時 借入者가 향후 제3자로부터의 借入과 관련하여 借入者의 財産을 擔保로 提供할 때에는 사전에 金融機關의 同意를 받도록 하고,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擔保를 提供한 경우에는 期限利益을 박탈할 수 있는 條項을 貸出約定書에 반영하도록 하는 方案을 檢討할 필요가 있다.

#### 5. 顧客 便宜 爲主의 貸出 運營

현재 當座貸越 等の 경우에 일부 실시되고 있는 限度去來制를 信用評價를 基礎로 하여 一般貸出 等 다른 貸出에도 폭넓게 擴大해 나가고 回轉貸出制度도 擴大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第 3 節 信用社會 定着을 위한 制度 및 與件의 整備

信用貸出의 擴大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關聯制度의 導入이나 金融機關의 業務處理方法, 慣行 等の 改善만에 의하여 可能한 것이 아니고, 國民의 生活樣式이나 意識水準, 金融去來慣行 面에서의 根本的인 變化를 통하여 信用社會가 定着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즉, 貸出은 金融機關과 借入者(家計, 企業)間에

---

5) 美國의 商業銀行의 경우 信用貸出時 일반적으로 貸出約定書에 擔保提供 制限 條項을 명시하고 있다.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信用貸出 擴大를 위하여는, 金融機關이 慣行 改善을 통하여 信用貸出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借入者도 信用이 없는 경우에는 金融貸出을 받을 수 없고 債務償還 不履行 等 信用을 잃은 경우에는 金融去來 및 日常生活 自體에 不利益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認識이 定着되어야 한다.

따라서 金融機關의 競爭提高를 통하여 金融機關의 信用貸出擴大를 誘導해 나가는 동시에 信用社會 定着을 위하여 關聯制度나 與件을 整備해 나가는 政策的 努力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金融機關 內部 및 監督次元에서 信用貸出의 事後責任에 대한 適정한 免責基準이 設定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刑事上의 處罰 適用도 改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借入者가 信用에 관한 情報을 虛偽로 作成, 提出하거나 事後에 債務不履行 等 信用을 잃는 行爲를 한 경우에 대한 制裁를 強化하여 效果的으로 信用情報 管理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超過資金需要 解消를 위한 意識의 轉換,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 不動產價格 安定 및 投機 抑制, 企業會計資料의 信賴性 提高, 企業情報 公示制度의 擴充, 信用評價 專門會社의 育成 等の 方案을 政策的으로 推進해 나가야 한다.

## 1. 貸出 取扱者에 대한 免責基準 마련

信用評價를 아무리 잘해도 危險(risk)을 완전히 評價할 수는 없고 信用도에 따라 貸出金利를 差等 適用하더라도 危險을 완전히 補填할 수 없다. 따라서 信用貸出이 不實化되더라도 貸出 取扱者에 대하여 故意·重過失이 없는 한 免責도록 하여야 信用貸出의 取扱이 可能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資金의 超過需要가 存在하고 借入者인 企業의 信用도가 낮아 不實化 危險이 높은 狀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貸出을 받는 것 自體가 特惠라는 認識이 만연되어 있고 信用貸出에 대한 道德的 危害(moral hazard) 側面의 先入見이 강하여 金融機關 自體도 正當한 節次의 遵守 與否보다는 발생된 損失額의 規模에 따

라 辨償 또는 人事上 責任을 묻는 것이 一般的이며, 銀行監督院의 檢査慣行도 貸出節次의 適正性보다는 結果에 置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銀行監督院이 1992년 7월에 正當한 審査節次를 거쳐 取扱한 信用貸出이 不實化된 경우에 貸出取扱者가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하였을 때에는 免責할 수 있도록 各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內規에 反映하도록 指導하였으나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의 遵守與否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實效性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金融機關別로 信用評價 能力을 提高시킴과 아울러 信用貸出의 事後 免責基準을 너무 넓게 設定하게 되면 貸出取扱者의 道德的 危害(moral hazard) 問題가 發生할 可能性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各 금융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免責基準을 合理的으로 定하도록 하고 이러한 免責基準에 該當되는 경우에는 監督機關의 評價나 問責時에 이를 反映하도록 制度化 내지 業務改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2. 刑事上 「業務上 背任罪」의 選別 適用

그동안 大企業의 倒産으로 巨額與信이 不實化되면 監督上の 懲戒 또는 金融機關 內部の 人事上 措置 및 辨償責任이 賦課되어 왔다. 이외에도 擔保貸出은 현실적으로 크게 問題가 되지 않으나 信用貸出은 대부분의 경우 『業務上 背任罪』 適用問題가 提起되어 왔다. 즉, 「刑法」<sup>6)</sup> 및 「特定 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sup>7)</sup>에 의거 貸出資金의 不實發生에 金融機關 取扱者의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는 경우 『業務上 背任罪』가 적용되어 財産上 損失價額에 따라 最高 無期 懲役까지 刑事處罰이 可能하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故意 또는 重過失 與否의 判斷基準이 曖昧한 경우가 많아 信用貸出 取扱을 忌避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

6) 刑法 第356條(業務上の 橫領과 背任)

7) 特定 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3條(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면 銀行의 去來企業이 不渡 危機에 처하게 되면 銀行은 去來企業에 대하여 貸出 去來를 中斷하고 不渡處理하거나 不足資金을 追加로 貸出하여 經營正常化를 圖謀하거나 할 것이다. 그러나 不足資金을 解消시키면 經營正常화가 가능하다고 判斷하여 信用으로 追加貸出을 한 후 倒産하게 되면 追加 貸出金額만큼 損失이 增加하게 되고 損失 發生에 대한 背任罪 適用 問題가 提起된다.

따라서 銀行에 損失을 끼친 結果를 가지고 刑事處罰을 하게 되면 貸出 取扱者가 實際로 故意·重過失이 없이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했다는 것을 立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銀行 損失의 最小化를 基準으로 貸出與否를 檢討하여 決定하기가 現實적으로 어렵다. 또한 巨額의 不實債權이 發生하는 경우 一般의 輿論을 意識하여 刑事上 責任을 묻는 경우가 많아 信用貸出 自體를 忌避하게 되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다.

過去에 이러한 경우의 免責과 關聯하여 特別立法을 推進한 바 있으나, 一般的으로 貸出取扱者の 不實貸出 責任을 묻지 않는 것으로 規定하면 憲法違反의 可能性이 있고, 故意나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處罰토록 하면 刑法上의 一般原則과 다를 바 없게 되어 結局 法規定의 實效性이 없다는 이유로 實現되지 못하였다.

金融機關의 貸出 業務와 관련한 「業務上 背任罪」는 實際 運用을 통하여 合理的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金融機關이 스스로 貸出에 대한 內部取扱節次를 合理的으로 定하고, 不實與信이 發生한 경우에 金融機關이 1차적으로 貸出取扱者の 貸出處理 內容을 調査하여 背任與否를 判斷한 後 搜查當局에 告發하는 경우에만 背任罪를 選別的으로 適用하는 搜查當局의 法適用 慣行側面의 改善이 必要하다.

한편, 故意·重過失을 判斷함에 있어 흔히 貸出取扱者和 去來 企業과의 結託與否를 基準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結託與否는 通常 響應이나 金品收受 與否에 따라 決定되고 있다.

金融機關이 去來企業의 資金事情이나 事業性 等에 대한 正確한 把握을 통하

여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財務諸表 等 會計의 公式資料보다는 非會計의 또는 非公式的인 企業의 內部情報의 把握이 더 重要的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情報把握을 위해서는 金融機關의 與信 擔當者가 去來企業의 關係者를 積極的으로 接觸하여야 할 必要性이 높다.

非公式的인 企業內部的 情報을 把握할 必要性은 金融自律化와 金融業務의 情報化가 進展될수록 계속 增大될 것이므로 刑法의 『業務上 背任罪』는 金融機關의 公共性과 企業性을 綜合的으로 勘案하여 具體的 事案에 따라 選別的으로 適用될 必要가 있다.

### 3. 不實去來者에 대한 制裁 強化

不實去來者는 一般的으로 金融去來에 있어 金融機關에 損失을 끼친 去來者를 의미하는바, 부득이한 경우와 故意的인 경우로 區分된다.

이 중 故意的인 경우는 貸出時 借入者가 故意로 信用에 관한 情報을 虛僞로 作成, 提供하여 金融機關이 信用評價 및 貸出審査를 잘못하도록 하는 것과 貸出去來는 正常的으로 이루어졌으나 事後에 借主가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여 故意的으로 債務를 不履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現在 金融機關에 損失을 끼친 不實去來者에 대하여는 金融機關의 共同規約으로 定한 基準에 따라 貸出去來를 制限 또는 禁止하고 있고 一定金額(10億원) 以上の 損失을 끼친 경우에는 出國禁止 措置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金融制裁는 金融機關에 損失을 發生시킨 結果에 따라 이루어져 善意의 借入者가 經營惡化로 인하여 債務를 不履行하는 경우까지 適用되고 있기 때문에 具體的 妥當性이 없으며, 그 制裁 自體도 매우 형식적이라 實效性이 매우 낮은 實情이다.

金融制裁는 虛僞資料 提供, 情報提供의 故意的인 拒否 및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의한 債務不履行 등 損失 發生에 借入者의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限定하고 그 制裁는 대폭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아울러 制裁도 金融機關 共通으로 一律적으로 適用할 것이 아니라 金融機關間에는 情報 提供 機構만 設置하고 制裁는 各 金融機關이 自律적으로 하도록 하는 伸縮의인 運營이 要望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金融機關과 去來하는 借入者로 하여금 스스로 信用을 쌓고, 信義誠實에 立脚하여 金融去來를 하도록 誘導하는 한편, 金融機關의 信用評價 能力도 提高시킬 수 있을 것이다.

#### 4. 超過資金需要 解消를 위한 意識의 轉換

超過資金需要 狀態가 持續되고 있고 擔保를 提供하고도 金融機關으로부터 貸 出받기를 希望하는 借入者가 많은 狀態에서는 信用貸出 擴大를 期待하기가 어렵다. 超過資金需要의 解消는 金利自由化에 따른 差等金利適用이나 通貨管理의 效率性 提高를 통한 豫備的 動機에 의한 不必要한 資金需要의 抑制 等 金融政策 側面的 對策推進으로 어느 정도는 解決이 可能할 것으로 期待되지만 보다 根本 的으로는 非效率的인 資金需要를 增大시키는 限界企業이 果敢하게 整理되고 이 러한 限界企業의 倒産을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社會 全般의 意識 轉換이 必要하다. 왜냐하면 限界企業의 資金需要는 資金市場에서의 超過資金需要를 誘發 시키고 金利를 全般的으로 上昇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中小企業의 倒産問題를 經濟的 側面보다는 政治·社會的 側面 에서 處理하려는 政治圈이나 政府의 行態는 是正되어야 하며, 言論도 이러한 方 向으로의 意識轉換이 切實히 要求된다.

1992년 이후 金融自由化 推進과 並行하여 各界의 強力한 非難과 壓力에도 불 구하고 金融原理에 입각하여 不實化된 企業을 지속적으로 整理하여 온 것이 다 른 金融市場 要因과 함께 最近의 超過資金需要 解消 等 金融市場에서의 資金需 給 安定과 金利의 下向安定 趨勢에 寄與한 것으로 判斷된다. 앞으로도 不實한

中小企業은 果敢히 整理하고 中小企業에 대한 政策的 支援도 競爭力 있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金融上 隘路를 解消해 주는 方法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와 아울러, 中小企業의 超過資金需要 解消를 위하여 中小企業專擔金融機關의 財源 擴充과 함께 業務運營의 效率化가 꾸준히 推進되어야 한다.

## 5.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

우리나라 企業의 財務構造는 外國에 비하여 매우 脆弱하고 이 중에서도 中小企業의 財務構造가 더욱 脆弱하다(〈表 11〉 및 〈表 12〉 參照). 이러한 財務構造 狀態下에서는 償還能力 側面에서 볼 때 信用貸出을 期待하는 것 自體가 무리라고 判斷된다.

따라서 信用貸出을 擴大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財務構造 改善을 期하여야 하며 財務構造 改善을 위하여는 企業의 收益力 增大, 內部留保 擴大뿐만 아니라 他人資本에 依存해서 事業을 하려는 企業風土가 改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잘되면 내 것, 망하면 金融機關 損害”, “企業은 망해도 企業人은 산다”는 등의 不合理的 意識이 바뀌어져야 한다.

아울러 政府에서도 現在 社會安定次元에서 취하고 있는 緊急經營安定資金, 滯拂資金支援 등과 같은 政策的 支援을 止揚하고 市場原理에 立脚하여 企業金融에 대한 政策을 推進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企業 스스로의 財務構造 改善努力을 誘導하기 위하여 現行 稅制上 直接金融으로 資金을 조달하는 것보다 借入으로 資金을 조달하는 것이 有利하게 되어 있는 借入金의 損費認定制度和 內部留保에 대한 紙上配當稅 適用問題는 再檢討할 필요가 있다.

## 6. 不動産 價格의 安定 및 投機 抑制

과거 持續的인 不動產 價格의 上昇은 金融去來面에서 不動產 擔保貸出을 促進시키고 企業이 金融機關 借入金의 상당부분을 生産을 위한 投資財源으로 活用하기보다는 不動產 投資에 使用하도록 誘導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이러한 金融資金 配分の 歪曲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土地政策 및 稅制 등을 통하여 不動產價格 安定 努力을 持續的으로 強化해 나가야 하며, 現在 系列 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 등 金融部門에서 擔當하고 있는 不動產 投機抑制와 관련된 政策은 金融自由化 推進과 함께 是正되어야 한다.

## 7. 企業會計資料의 信賴性 提高

企業이 節稅 내지 脫稅 등 稅金回避 目的으로 對外公表되는 財務關聯 資料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基準이 서로 달라 公표된 企業의 財務諸表 등 客觀的인 資料의 信賴度가 낮아서 이에 根據하여 信用評價를 하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公認會計士의 公信力 確保 등을 통한 外部監査機能의 擴充,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一元化 및 國稅廳·證券監督院·金融機關間 會計資料 및 情報의 交換體制 樹立 등을 추진함으로써 企業 會計資料의 信賴度를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會計帳簿가 未備된 零細企業에 대하여는 國稅廳이나 關聯 金融機關이 會計帳簿 作成을 指導해 나갈 必要가 있다.

## 8. 企業情報 公示制度의 擴充

金融機關이 企業의 信用을 評價하고 信用度에 따라 貸出條件을 정하여 信用만을 바탕으로 貸出하기 위하여는 企業의 信用과 관련된 情報가 求得可能하고 이러한 情報의 正確性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企業들은 企業內容을 은폐하려는 閉鎖的 因習을 가지고 있고 經濟

活動의 二重構造로 인해 公表資料와 實際內容이 다르며, 公表된 情報도 有關기관 상호간에 交換이 되고 있지 않아서 情報求得과 情報의 信賴性 確保 모두가 매우 어려운 實情에 있다.

따라서 信用貸出을 받고자 하는 企業은 企業 스스로의 利益을 위해서도 企業 情報, 특히 信用도와 관련된 非會計的 情報를 金融機關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情報提供을 促進하고 情報의 正確性を 높이기 위하여 企業 情報의 對外 公示制度가 擴充<sup>8)</sup>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企業情報의 公示와 企業情報의 關聯機關間 交換問題는 企業의 秘密保護라는 側面과의 調和가 필요하다. 한편, 借入者가 金融機關으로부터 보다 쉽게 信用貸出을 받기 위하여는 하나의 金融機關에 집중적으로 거래<sup>9)</sup>하여 金融機關이 借入者의 信用에 관련된 情報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것이다.

## 9. 信用評價專門機關의 育成 및 活用度 提高

金融機關의 信用評價 專門人力 不足, 評價對象業體의 過多 및 同一業體에 대한 金融機關間 重複評價에 따른 非效率性 등을 勘案하면 專門的인 信用評價機關의 信用分析 結果를 貸出審査에 積極 活用하는 것이 效果的인 方案이라고 判斷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信用評價를 專門으로 하는 會社가 韓國信用評價(株)를 비롯하여 3個社가 있으나 信用評價에 대한 一般의 認識 不足, 評價會社規模의 零細 및 營業基盤 脆弱 等에 따른 評價의 公正性 問題, 財務諸表 等 客觀的인 資料

- 
- 8) 情報費用은 固定費的 性格을 갖는 것이므로 情報의 共有는 金融費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 9) 金融機關과 借入者의 顧客關係(customer relationship)形成은 情報求得 費用을 절감시키고 金融機關의 監視機能(Monitoring)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信用貸出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爲主의 信用分析에 따른 評價未洽 等으로 專門信用評價機關의 活用度가 높지 않은 實情이다.

앞으로 金利自由化가 本格的으로 推進되어 借入者의 信用度에 따른 金利差等化가 이루어지게 되면 信用評價의 必要性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專門人力 確保 等を 통한 評價能力의 提高, 中長期的으로 外國 信用評價會社의 國內進出을 통한 競爭 提高 等の 方法을 통하여 信用評價專門會社를 育成해 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金融機關의 信用評價會社 利用度를 높이기 위한 誘引 方案을 政策的 側面에서 檢討해 나갈 필요가 있다.

〈表 15〉 우리나라의 信用評價機關 現況(1994年 3月末 現在)

|         | 韓國信用評價(株)                            | 韓國信用情報(株)              | 韓國企業評價(株)                |
|---------|--------------------------------------|------------------------|--------------------------|
| 設 立 日   | 85. 2. 26                            | 86. 9. 12              | 83. 12. 29               |
| 資 本 金   | 85억원                                 | 100억원                  | 50억원                     |
| 出 資 機 關 | 投資金融·綜合金融, 證券會社 및 投資信託會社 等           | 國內 31個 銀行              | 韓國產業銀行                   |
| 事 業 內 容 | 企業信用度 評價를 통한 會社債 等の 等級評價 經營相談, 株式 評價 | 左 同<br><br>經營相談, 株式 評價 | 左 同<br><br>產銀與信關聯 事業 性檢討 |
| 專 門 人 力 | 98名                                  | 150名                   | 70名                      |

## 第 4 節 信用保證制度的 擴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中小企業은 信用도가 낮을 뿐 아니라, 金融市場에서의 相對的 不利<sup>10)</sup> 등으로 基本的으로 信用貸出이 어려운 實情에 있으며, 信用貸出의 擴大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信用貸出이 定着될 때까지는 中小企業의 擔保不足을 補完하기 위한 信用保證制度的 擴充이 必要하다.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制度的 擴充은 信用評價 技法의 發展에 寄與하게 될 것이며, 中小企業의 金融利用上 相對的 不利를 補完해 줌으로써 金融利用 機會를 擴大시키고 나아가 政策金融縮小<sup>11)</sup>로 金融市場의 與件을 改善시켜 窮極의 으로는 信用貸出 擴大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現在の 『信用保證基金』은 1976年 6월에 發足되어 保證對象을 初期에는 大企業까지도 包含하고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60% 이상을 우선 保證토록 하였으나, 1983년 이후부터 新規로 取扱하는 保證은 中小企業에 限定하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는 新技術事業金融會社의 一般融資金과 金融機關의 技術開發資金에 대하여 주로 保證하는 『技術信用保證基金』이 設立되었으며 이와 類似한 形態로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 『住宅信用保證基金』이 運營되고 있고, 保險形態로는 保證保險會社의 保證保險이 있다.

本節에서는 信用保證基金과 技術信用保證基金에 限定하여 現況 및 問題點을 分析하고 活性化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10) 「맥밀란 갭」(Macmillan gap) 또는 金融隔差(financial gap)라고도 한다(姜文秀, 『中小企業 金融과 信用保證에 관한 小考』, 韓國開發研究 '85 가을호, 韓國開發研究院, 1985, p. 49).

11) 信用保證을 통하여 金融利用機會가 擴大되면 量的支援 側面에서의 政策金融縮小가 可能해진다. 이러한 意味에서 信用保證制度를 一般金融과 政策金融의 中間에 位置하는 制度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山下邦男, 『中小企業金融의 方向と政策』, 同友會館, 1976).

## 1. 現況 및 問題點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을 주로 하고 있는 信用保證基金 등은 中小企業 金融擴大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첫째, 財源不足으로 保證額의 增加가 鈍化되고 있다.

즉, 1991년까지 높은 伸長勢를 보였던 信用保證 規模가 1992년 以後 代位辨濟의 急增에 따른 保證能力 減少 등으로 小幅 增加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1993年 末 現在 保證運用倍數(保證殘額 / 基本財産)도 14.2倍로 法定 限度인 15倍에 近接하고 있어 新規保證 取扱이 어려운 實情에 있다.

〈表 16〉 信用 保證 推移<sup>1)</sup>

(단위 : 億원, %, 倍)

|             | 1990     | 1991     | 1992    | 1993     |
|-------------|----------|----------|---------|----------|
| -保證殘額 (A)   | 60,951   | 80,478   | 84,349  | 107,208  |
| (純增)        | (19,896) | (19,527) | (3,871) | (22,859) |
| * 供給基準      | 52,243   | 62,709   | 60,952  | 82,029   |
| -基本財産 (B)   | 7,433    | 8,114    | 7,228   | 7,545    |
| (運用倍數, A/B) | (8.2)    | (9.9)    | (11.7)  | (14.2)   |

註 : 1) 信用保證基金과 技術信用保證基金의 合計額임.

資料 : 財務部 中小金融課

둘째, 信用保證機關의 財源造成額 중에서 政府出捐金의 比重은 1993年 末 現在 22.5%에 불과하고 주로 金融機關의 出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中小企業의 擔保力 不足을 支援하기 위한 財政의 役割이 未洽하고 公的機關으로서의 機能弱화가 憂慮되고 있다. 最近 政府出捐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sup>12)</sup> 아직 未洽한 實

12) 1991年 末까지의 出捐總額이 1,807억원에 不過하였으나 1992年中 1,640억원, 1993年中 1,500억원이 出捐되었고 1994年中에는 3,100억원이 出捐될 豫定으로 있다.

情으로 향후 金融自律化가 진전되면 一般 商業金融機關의 強制出捐도 限界가 있을 것이므로 基金 財源調達上 隘路가 豫想된다.

〈表 17〉 信用保證機關에 대한 出捐 現況(1993年末 現在)

(單位：億원, %)

|      | 信用保證基金        | 技術信用保證基金     | 計             |
|------|---------------|--------------|---------------|
| 政 府  | 3,077( 18.7)  | 1,870( 33.5) | 4,947( 22.5)  |
| 金融機關 | 13,361( 81.3) | 3,707( 66.5) | 17,068( 77.5) |
| 計    | 16,438(100.0) | 5,577(100.0) | 22,015(100.0) |

註：( ) 內는 比重.

資料：財務部 中小金融課

셋째, 信用保證基金의 代位辨濟 規模가 擴大되고 있는 點에 비추어 볼 때 中小企業專門 信用調查機關으로서의 役割이 未洽하고 企業에 대한 所得補助의 인 機能을 遂行하는 側面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審査評價機能이 活性化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信用保證對象이 政策的인 必要에 의하여 決定되고 있으며 信用保證 業體의 倒産을 當연시험에 따라 信用調查 技法이 開發되지 않은 데 基因한 것으로 判斷된다.

이와 관련하여 信用保證機關이 保證書 發給時 擔保를 要求하는 事例도 있어 中小企業의 資金調達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表 18〉 年度別 代位辨濟推移<sup>1)</sup>

(單位：億원, 倍)

|            | 1991   | 1992   | 1993    |
|------------|--------|--------|---------|
| 保證 殘 額(A)  | 80,478 | 84,349 | 107,208 |
| 代 位 辨 濟 額  | 2,499  | 6,753  | 6,804   |
| 求 償 額      | 417    | 650    | 1,440   |
| 純代位辨濟額(B)  | 2,082  | 6,103  | 5,364   |
| 代位辨濟率(B/A) | 2.6    | 7.2    | 5.0     |

註：1) 信用保證基金과 技術信用保證基金의 合計額임.

資料：財務部 中小金融課

넷째, 保證業務 運營이 硬直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保證料는 保證對象企業의 信用度에 따른 差等이 이루어지지 않고 中小企業의 경우 年間 保證金額의 1%를 一律的으로 適用하고 있어 優量企業에게는 負擔이 過重할 뿐만 아니라 不必要한 保證需要를 增大시키는 傾向이 있다. 또한 信用保證을 한번 받은 경우에는 거의 固定化되고 있어 新規企業에 대한 保證을 制約하고, 個別企業의 保證規模가 점차 커지는 結果를 招來하는 等 非效率的인 面이 많다.

다섯째,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擴大 努力을 阻害하는 面이 있다.

信用保證基金의 保證은 慣行上 全額保證을 주로 하고 있어 金融機關 立場에서는 擔保가 없는 경우에 無條件 信用保證을 받아 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貸出企業에 대한 信用調査나 評價를 소홀히 하고 企業情報의 保證機關에 대한 提供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活性化 方案

信用保證基金은 國民經濟的 側面에서 特定한 政策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設立된 機關이므로 信用保證基金의 業務 活性化는 收益性和 公共性이 조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方向에 입각하여 업무 活性化 方案을 提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信用保證機關에 대한 出捐 擴大를 통하여 財源을 擴充함으로써 新規保證 餘力을 擴大하여야 한다.

信用保證基金의 基本財産은 保證債務의 基礎로서 代位辨濟를 위한 準備金의 性格과 債權者에 대한 保證債務의 最終 擔保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信用保證基金의 保證餘力을 擴大하기 위하여는 出捐擴大를 통하여 基金 規模를 늘려나가야 하며, 특히 財政의 出捐規模를 金融機關의 出捐規模와 同一한 水準까지 擴大하여 나갈 必要가 있다. 이러한 財政出捐의 擴大는 현재와 같이 政府

가 信用保證을 公共性에 立脚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내지 施惠 次元에서 政策的으로 運用할 것을 要求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參考로 日本 및 대만의 信用保證機關의 財源을 살펴보면 中央政府 또는 地方 公共團體 出捐金의 比重이 각각 65%<sup>13)</sup> 및 75%<sup>14)</sup>에 이르고 있다.

또한 金融機關 出捐金 納付機關도 第2金融圈의 信用保證基金 利用度 增大와 並行하여 現行 第1金融圈에서 第2金融圈까지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해 나갈 必要가 있다.

둘째, 金融機關도 信用保證貸出에 一部 責任을 지는 連繫保證制度가 必要하다.

金融機關이 信用保證機關에 保證을 要請할 경우 貸出金의 一部를 申請 金融機關의 信用으로 取扱하는 경우에만 信用保證을 하도록 하여 信用保證機關의 信用保證을 金融機關의 與信審査 및 事後管理와 連繫하여 運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不適合한 企業에 대한 信用保證을 抑制시키고 不必要한 保證需要를 縮小해 나갈 수 있으며 短期的으로는 信用保證機關의 취약한 信用評價機能을 補完할 수 있다.

셋째, 金利自由화와 同一한 次元에서 保證料를 保證申請人의 信用도에 따라 差等化하고 代位辨濟 水準을 감안하여 現實化함으로써 價格側面에서 審査機能의 活性化를 誘導해 나가고 保證料 收入에 의한 代位辨濟額 補填率을 높여 나가야 한다.

넷째, 信用保證機關의 信用調査 및 評價能力을 提高하고 內部 信用評價 基準을 客觀化하는 한편 免責基準을 마련함으로써 保證業務의 活性化를 誘導하면서, 審査擔當 職員과 保證申請人의 結託에 의한 審査疏忽이 發生하지 않도록 適正한 內部 監督 體制를 講究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長期的으로는 信用保證制度가 信用社會 構築이라는 外部效果를 創出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信用保證基金

13) 1992年末 現在 『信用保證協會』에 대한 出捐金 比率.

14) 1992年末 現在 『中小企業 信用保證基金』에 대한 出捐金 比率.

을 信用調査 專門機關으로 育成<sup>15)</sup>하기 위한 政策的 配慮가 必要하다.

다섯째, 信用保證機關의 擔保取得은 엄격히 制限하여야 한다.

현재 信用保證機關은 原則적으로 擔保 없이 保證取扱을 하고 있으나, 例外的으로 保證申請人의 必要에 의해 스스로 擔保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擔保를 取得할 수 있으며 實際 取得한 事例가 많이 있다. 이러한 擔保取得은 中小企業으로부터 擔保를 取得하지 않는 短期金融會社 等으로부터의 資金 融通時 資金調達을 圓滑하게 하는 側面도 있으나 信用保證機關의 設立目的과는 論理的으로 矛盾된다. 또한 實際 執行過程에서 擔當者의 責任回避 手段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擔保 提供을 強制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實質的인 中小企業 信用保證을 위하여 擔保取得은 엄격하게 制限하여야 한다.

---

15) 信用情報의 效率的 管理·利用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1993년 11월 『行政刷新委員會』에서 가칭 『信用情報管理法』을 제정하여 財務部長官이 일괄 관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法制定作業을 추진중에 있다. 同法이 制定되면 信用保證機關을 信用調査專門機關으로 육성하기 위한 制度的 基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第 6 章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높여 健全하고 均衡 있는 發展을 이루기 위해서는 相對的으로 脆弱한 部門인 中小企業을 積極 育成하여야 한다. 그러나 향후 中小企業 育成政策은 自律을 바탕으로 體質을 개선하는 데에 重點을 두어야 하며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政策도 政策金融 爲主의 支援方式은 止揚하고, 市場原理의 틀 內에서 中小企業의 構造上 不利를 補完하는 方向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이러한 中小企業의 構造上 不利는 資金의 可用性(availability)과 資金의 接近性(accessibility) 問題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의 金融自由化 推進과 관련하여 볼 때 보다 重要하고 實質的인 問題는 資金의 接近性 側面에서의 信用貸出 擴大라고 判斷된다.

信用貸出의 擴大는 金融資金配分の 效率性을 높이고 金融附帶費用을 輕減시키며 金融資金의 適期支援을 可能케 할 뿐 아니라, 不動產價格의 安定을 통하여 經濟 全般의 體質強化에 寄與하는 등 國民經濟의 側面에서 많은 肯定的인 效果가 있으며, 특히 銀行 爲主로 資金을 調達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實際的인 隘路인 擔保不足問題를 解決해 줌으로써 中小企業의 金融利用 機會 擴大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金融機關 立場에서도 향후 產業構造의 高度化로 서비스產業 및 技術集約產業의 比重이 높아져 全體產業의 固定資產比重이 낮아지고 擔保餘力이 減少하게 될 것에 대비하고, 金融市場 開放 推進에 따른 外國金融機關과의 競爭에서 優位를 確保하기 위해서 스스로 信用貸出을 擴大해 나가야 한다.

信用貸出이 擴大되려면 借入者가 스스로 形成한 信用이 있어야 하고, 借入者의 信用을 金融機關이 調査·評價할 수 있어야 하며, 信用도에 따라 貸出條件을 정할 수 있는 등 社會 全般的으로 信用秩序가 定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現實的인 制約要因으로는 金融構造의 側面에서 資金超過

需要, 金利規制, 企業財務構造의 脆弱, 金融機關의 信用評價機能의 未洽 등을 들 수 있고, 金融外的 要因으로는 信用에 대한 意識水準의 低位, 信用貸出에 대한 否定的 視角, 法制面에서의 制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制約要因을 감안하여 볼 때 信用貸出 擴大는 金融機關의 審査技法의 擴充이나 慣行改善, 政府의 政策的인 制度의 導入 등으로 短時日 內에 解決될 수 있는 問題가 아니고, 金融慣行이나 意識構造의 變化와 함께 그동안의 成長過程에서 불가피하게 招來된 構造의인 問題가 解決되어야 可能하다.

따라서 信用貸出을 擴大하기 위하여는

첫째, 金融政策面에서 金融機關이 競爭提高를 통하여 스스로 信用貸出을 擴大하도록 金融自由化·金利自由化를 持續적으로 推進해 나가는 등의 與件 改善과 아울러 金融政策 運用上 誘引을 擴大해 나가고,

둘째, 金融機關 自體的으로도 信用貸出 取扱基準의 標準化·客觀化, 貸出審査機能의 擴充, 信用評價 方式의 改善 등 顧客便宜 爲主로 貸出業務를 運營해 나가기 위한 努力을 하여야 하며,

셋째, 信用貸出 取扱者에 대한 免責基準設定, 『業務上背任罪』의 選別適用, 不實去來者에 대한 制裁強化, 企業의 財務構造改善, 不動產投機抑制, 企業會計資料의 信賴性 確保, 企業情報公示制度의 擴充, 信用評價專門機關의 育成 등 信用社會 定着을 위한 政策이 꾸준히 推進되어야 한다.

이러한 政策的 努力이 이루어지면 貸出金利의 差等適用이 可能해지고 金融機關間 競爭이 높아져 信用貸出이 점차 擴大될 것이며, 특히 향후 金融電算化의 推進과 金融實名制 實施로 보다 正確한 情報의 求得이 容易해지게 되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信用도가 낮은 등 金融利用上 構造의 不利를 안고 있으며 金融機關이 信用評價를 아무리 잘해도 現實적으로 情報의 非對稱性에 의한 內在的 限界가 있는 한 償還危險을 완전히 評價할 수 없기 때문에 短期間 內에 信用貸出이 定着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短期的으로는 中小企業 金融을 원

활히 하기 위하여 信用保證機關에 대한 財政出捐 擴大, 金融機關과의 連繫保證  
制度 導入, 保證料의 差等適用, 信用評價機能의 擴充 등을 통한 信用保證制度의  
擴充努力을 並行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 〈參考文獻〉

- 姜文秀, 「中小企業金融과 信用保證에 관한 小考」, 『韓國開發研究』, 1985년 가을號, 韓國開發研究院, 1985, pp. 39~66.
- 姜文秀·朴垞卿·李道星·李承勳·趙觀行, 『中小企業의 産業調整과 中小企業 支援施策의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90. 12.
- 姜柄皓, 『金融制度論』, 博英社, 1993. 3.
- 郭匡日·金淵星, 「中小企業을 위한 信用保證制度의 效率化 方案」, 『韓國의 小規模企業』, 國民家計經濟研究所, 1992. 12, pp. 63~105.
- 郭度勳, 「中小企業 金融의 效率的 支援 方向」, 『保證月報』, 第131號, 信用保證基金, 1991. 11, pp. 28~41.
- 權寧澤, 「信用保證制度의 戰略的 運用에 관한 研究」, 『保證月報』, 第120號, 1991. 9, pp. 40~76.
- 金滿堤, 『新韓國의 將來는 中小企業 育成에 달려 있다』, 행림출판, 1993. 3.
- 金秉柱, 「金融政策의 基本課題와 方向」, 『韓國經濟의 새로운 方向定立을 위한 財政·金融政策』, 韓國租稅研究院, 1993. 12, pp. 121~149.
- 김정인, 「日本 銀行들의 中小企業 貸出戰略,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국민 경제리뷰』, 제60호, 국은경제연구소, 1993. 12, pp. 6~11.
- 金韓泰, 『金融市場 開放에 따른 信用貸出 活性化 方案』, 碩士學位論文, 高麗大 學校 經營大學院, 1992. 11.
- 南大祐, 「우리나라 信用管理 現況과 發展方向」, 『投資金融』, 1984. 12, pp. 10~20.
- 閔海榮, 「信用保證制度의 發展過程과 우리의 課題」, 『技術保證月報』, 第3號, 1991. 9, pp. 3~13.
- 朴垞卿, 「新經濟跳躍을 위한 中小企業 課題와 政策方向」, 『保證月報』, 第143號, 信用保證基金, 1993. 8, pp. 3~27.

- 白洛基·朴榮郁·梁炫奉·趙철·李成勳, 『中小企業 支援制度的 活用實態와 效果分析』, 產業研究院, 1992. 3.
- 白洛基·朱炫·趙철, 『最近 中小企業 經營惡化的 原因과 對策』, 產業研究院, 1992. 5.
- 成用模, 「中小企業의 財務構造 現況과 金融利用 實態分析」, 『국민경제리뷰』, 제 50호, 국은경제연구소, 1993. 7, pp. 16~22.
- 孫正植·姜柄皓·許榮彬, 『金融機關 經營論』, 博英社, 1990. 8.
- 尹虎榮, 「信用貸出 活性化 方案에 관한 小考」, 『住宅金融』, 1991. 9, pp. 18~37.
- 李明植, 「信用貸出 活性化를 위한 信用評點制 適用方案」, 『국민경제리뷰』, 제47호, 1993. 6, pp. 6~14.
- 李在雄, 「差等金利制度和 信用社會: 信用에 대한 懲戒와 補償」, 『投資金融』, 第 141號, 信用保證基金, 1993. 6, pp. 3~11.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各號.
- 鄭健溶, 『우리나라 金融政策 運營現況과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87. 7.
- 趙潤濟, 「國際環境變化와 우리나라의 金融政策」, 『韓國經濟의 새로운 方向定立을 위한 財政·金融政策』, 韓國租稅研究院, 1993. 12, pp. 157~200.
- 崔長鳳, 『資本去來 自由化에 따른 效率的인 通貨 및 資本流出入 管理』, 研究報告書 94-01, 韓國租稅研究院, 1994. 2.
- 統計廳, 『鑛工業統計 調查報告書』, 1992.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93.
- \_\_\_\_\_, 『企業經營分析』, 1994.
- \_\_\_\_\_, 『調查統計月報』, 各號.
- \_\_\_\_\_, 『通貨金融統計』, 1993.
- \_\_\_\_\_, 『金融機關 與信運用 關聯 規程集』, 1993.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1994.
- 韓信經濟研究所, 『金融·證券用語辭典』, 1991. 5.

- 山下邦男, 「中小企業金融の方向と政策」, 『経済政策と中小企業』, 同友會館, 1976.
- Baltensperger, E. and J. Devinney, “Credit Rationing Theory: A Survey and Synthesi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985, pp. 484~502.
- Bester, H., “Screening vs. Rationing in Credit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s Riview*, 1985, pp. 850~855.
- Brady, T. F., “Changes in Loan Pricing and Business Lending at Commercial Banks,” *Federal Reserve Bulletin*, 1985, pp. 1~13.
- Jaffe, D. and J. E. Stiglitz, “Handbook of Monetary Economics: Credit Rationing,” Edited by B. M. Friedman and F. H. Hahn, Elsevier Science Publishers, Amsterdam, 1990, pp. 837~838.
- Kim, Kihwan and Danny M. Leipziger, “The Lessons of East Asia: A Country Studies Approach, Korea: A Case of Government-Led Development,” The World Bank, 1993.
- Levitsky, Jacob and Ranga N. Prasad,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 58, Industry and Finance Series, The World Bank, 1989.
- Stiglitz, J. E.,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paper prepared for Annual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The World Bank, 1993.
- Takeda, M., “A Theory of Loan Rate Determination in Japan,” *Bank of Japan Monetary Economics Studies*, 1985, pp. 71~133.
- Virmani, Arvind, “The Nature of Credit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 A Framework for Policy Analysi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524, The World Bank, 1982.